

SAC.b.2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1999년 3월 25일~28일 오키나와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일본 미군기지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4 회 한 일 법 률 가 교 류 회
아 시 아 의 평 화 와
한 국 · 일 본
미 군 기 지 문 제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새로나온 책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엮음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통계, 국가보안법의 운용사례, 개폐를 둘러싼 각종 발언들을 정리해놓고, 아울러 대통령 출범 이후 몇 차례의 사면, 석방 등에서 나타난 모습과 보안관찰법의 운용사례들을 돌아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 '인권대통령' 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록내용

-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문제
-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 감옥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부록: 국가보안법 여론조사 결과 (1998년 11월말 실시)

퍼낸이 : 사람생각(전화 3675-4096, 전송 3675-4098)

총 167쪽 가격 8,000원

-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CLICK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ISBN 89-87761-10-X 03340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발간사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를 마치고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을 매우 의미 깊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번째 교류회가 되는 이번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격전지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후에는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을 위하여 섬 전체의 5분의 1이라는 광대한 토지가 미군기지로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3박4일간 미군기지의 현황을 둘러보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모두 당면한 미군기지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한 것은 매우 유익하고 인상깊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일본측의 이토 가즈오 변호사님, 긴조 지카시 변호사님과 한국측의 임종인 변호사님, 발제문을 집필하고 발표하신 일본의 에노모토 노부유키 외 여섯 분 변호사님과 한국의 노정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일법률가교류회를 헌신적이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던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님께서 지난 3월 4일 갑자기 별세하시어 이번 교류회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신 것은 지금도 못내 아쉽고 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교류회를 마치고 이제 그 경과와 성과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부디 이 보고서가 한일 양국의 미군기지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9. 5.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 일본 미군기지 문제

-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발행일 · 초판 1쇄 1999년 7월 2일

발행인 · 최영도

편집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위원회

발행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등록 제 22-1146호(1997. 5. 23.)

천리안 민변 하이텔 minbyun7

진보넷 참세상 minbyun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ISBN 89-87761-10-X 03340

목 차

발간사 : 한일법률가교류회를 마치고 / 최영도 - 3

참가보고 : 준비과정, 회의, 그리고 전체적인 소감 / 임종인 - 7

본회의·토론 :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일본 미군기지 문제

주한 미군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 노정희 - 13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문제점 / 에모노토 노부유키 외 - 25

토론 보고 - 58

강연 등 : 오끼나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 근현대사에서 오끼나와 민중의 발자취—징병제, 오끼나와전투, 미군지배 / 田港朝樹 - 67

오끼나와에서의 한국·조선인의 상황 / 다카다 키요에 - 76

서평 :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 / 이유정 - 81

평가·감상 : 한일법률가교류회를 마치고

한국측 평가모임 회의록 - 87

일본측 발제자 평가와 감상 / 가토 유타카 - 93

오끼나와 모임을 다녀와서 / 민경한 - 96

오끼나와의 독립군 / 이보희 - 101

일본이면서 일본이 아닌 오끼나와 / 최병학 - 105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참가하고 / 오노데라 요시가타 - 110

기타 자료

한일법률가교류협회 결성식 참가보고서 / 이유정 - 115

오끼나와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회의 참가보고서 / 노정희 - 118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 서경식 - 123

참가자 명단 - 138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 보고

—준비과정, 회의, 그리고 소감—

임종인

1. 글머리에

지난 3. 25.(목)부터 28.(일)까지 일본의 오끼나와 나하시에서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있었다. 일본측은 70여 명이, 오끼나와측은 30여 명이 참가하였다(오끼나와의 역사적 특성 때문인지 오끼나와 사람들은 일본과 오끼나와를 대립하여 불렀다). 우리 민변은 53명(변호사 32, 부인 13, 아이 3, 간사 1, 일반 4)이 참가하였다. 연륜이 쌓여서겠지만 네 차례 회의 중 이번 회의가 가장 짜임새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된다.

2. 준비과정

제3회 한일법률가교류회가 96. 11. 2.과 3. 서울에서 있었다(우리 나라에서 회의를 할 때는 서울은 피하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결론지었다. 서울에서 회의를 하니 우리측 참석자들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였다. 예컨대 저녁 만찬 때 일본측은 24명인데, 우리는 10명 참석). 이 회의를 마치고 여러 문제점을 반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준비하였다.

가. 민변 동북아특별위원회 결성(97. 1. 서울)

민변 내에 일본과의 교류를 담당할 주체가 불

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다. 사무국 간사가 일본 변호사와 평소 연락을 담당하였으나, 변호사 중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측과 평소 연락을 담당하고, 2년마다 열리는 교류회를 담당할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 97. 1. 민변 내에 일본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97. 5. 민변 총회에서 동북아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북아특위는 평소 일본측과 연락하며 교류회를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 일을 하였다. 동북아특위 위원장은 내가, 간사장은 이유정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회의가 끝난 후 99. 4. 모임에서 위원장과 간사장을 바꾸어 위원장은 이기욱 변호사가, 간사장은 김진국 변호사가 맡았다. 동북아특위 회원은 99. 5. 현재 고영구, 이유정, 이기욱, 박성호, 노정희, 김진국, 이오영, 전해철, 최승수, 박영립, 도두형, 백승현, 차병직, 윤기원, 조상희, 박찬운, 박수근, 이덕우, 장완익, 최봉태, 김봉석, 양태훈, 김우진, 김석연, 최선민, 임종인 합하여 26명이다.

나. 일본측과 2차 평가회의(97. 4. 28. 일본 도쿄, 97. 10. 서울)

3회 교류회 평가회의를 하자고 하여 97. 4. 28.

일본의 도쿄 근처의 아타미에서 우리측 4명과 일본측 10명이 솔직한 토론을 하였다(우리측 참가자—임종인, 백승현, 윤기원, 한택근 일본측 참가자—후지모토, 아즈사와, 다나카, 하야시, 고이케, 다카기, 오까다, 스즈끼, 마쓰우라, 은용기).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류의 목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둘째, 교류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소 교류가 필요하고, 교류의 성과를 축적하여야 하고,
셋째 일본측 참석자의 성향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일본측 참석자 범위를 확대해주고, 일본측 발표논문의 수준을 높여줄 것과 논문 작성자 선정이 힘들면 주제 수를 줄이고,
넷째, 민변 내에 동북아특위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측도 상설교류단체를 만들고,
다섯째, 분과회의를 없애고, 주제를 2개로 하는 전체회의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측은
첫째, 참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일본측 논문의 수준이 낮지 않다.
셋째, 논문 발표시간을 줄이고, 토론시간을 늘리자
넷째,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1년에 2번 준비하는 사람 몇 명이 한국과 일본에서 만나자
다섯째, 너무 꼭 짜인 교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끝에 다음을 합의하였다.
가. 교류는 계속한다.
나. 시기는 2년에 한번에 구애받지 않는다(다음은 99. 봄 오끼나와로 잠정 합의).

다. 토론시간을 늘리자.
라. 발표주제를 줄인다.
마. 평소에 자주 만나자.

이날 모임은 우리가 주도했으며, 공세적으로 일본측을 비판하였다. 일본측은 수세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결국은 화기에애하게 여러 사항을 합의하였다.

97. 10. 서울에 아즈사와, 하야시 변호사가 와 2차 평가회의를 열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1차 평가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다. 일본 법률가들 '일한법률가교류협회'라는 상설단체 결성(98. 2. 25. 도쿄)

우리 민변과 교류할 상설단체가 없다는 우리의 지적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일본 변호사들과 대학교수 110명은 상설단체인 일한법률가교류협회를 1998. 2. 25. 도쿄에서 결성하였다.

대표이사는 이또 가즈오, 구마가이 히사유키,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 3인이고, 사무국장은 아즈사와 가즈유키, 사무국 차장은 고이케 신이치로, 다나카 시게히도, 구와하라 이꾸로, 요네꾸라 쓰토무, 아야시 가즈오, 은용기 등 6인이었다.

결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임종인, 김진국, 노정희, 이유정 변호사가 결성식에 참석하였다(별첨 이유정 변호사의 일한법률가교류협회 결성식 참가보고서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3월호에 게재).

라. 오끼나와 준비회의(98. 10. 3. 일본 오끼나와 나하)

이번 교류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를 정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98. 10. 3. 오끼나와 나하시에서 있었다.

참가자는 우리측에서 민변 윤종현 사무총장, 나, 조상희, 노정희 4명 일본측에서 후지모토, 아즈사와 변호사 등 4명, 오끼나와측에서의 긴쥬, 가토, 나까야마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로는 미군기지문제로 하여 오끼나와 미군기지문제와 우리나라에서 미군기지문제로 정하였고, 오끼나와 역사와 오끼나와 한국인의 역사에 대하여 강연을 듣기로 하였다. 그리고, 하루를 내어 오끼나와를 알기 위하여 미군기지와 2차대전 전적지 순례를 하기로 하였다.

일정은 우리측 비행기 사정을 고려하여(서울 나하간 비행기는 화, 목, 일 요일 3편 뿐) 3. 25. (목)부터 28.(일)로 정하였다(별첨 노정희 변호사 오끼나와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회의 참가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1월호 게재).

다. 민변 내에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모임 결성(98. 10. 서울)

오끼나와 준비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교류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은 윤종현, 도두형, 백승현, 박성호, 박찬운, 조상희, 노정희, 이인호, 이유정, 나, 장경주 간사였고, 준비모임의 위원장은 내가, 간사는 조상희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는 교류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모든 민변 회원에게 보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누어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논문작성자 선정, 자료집 준비등을 하였다. 미군기지문제에 대한 논문은 노정희 변호사가 쓰기로 하였다. 아라사키 교수가 쓴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역사비평사, 1999.)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누어 주어 오끼나와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또 발제문도 1주일 전에 모두 나누어주었다. 3. 15. 장경주 간사가 갑자기 제네바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1달 반 동안 출국하게 되

어 최미희 간사가 갑자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간사는 갑작스럽게 일을 맡았음에도 성실히 잘해주었다.

3. 4. 일본측 대표인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가 심근경색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았다. 민변에서는 최영도 회장의 조사를 일본에 보내 영결식에서 대독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3. 회의

가. 첫날 3. 25.(목)

3. 25. 9시 25분에 우리 53명은 김포공항을 떠나, 11시 35분 나하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날 오후 수리성과 나하박물관, 옥천동 관광을 우리끼리 하였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본측과 친목모임을 가졌다.

나. 둘째날 3. 26.(금)

일본측 참가자들과 우리가 섞여서 버스 3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차대전 전적지와 미군기지를 구경하였다.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히메요리, 평화공원, 후텐마 기지와 가테나 공군기지를 견학하였다. 저녁은 자유시간이었다.

다. 셋째날 3. 27.(토)

오끼나와 대학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가 있었다. 오전에는 개회식과 오끼나와 근현대사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오끼나와에서 한국 조선인의 상황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은 다카다라는 여사분이 하였는데, 오끼나와에 있는 한국인이 강의하는 것이 좋았을 듯하였다.

오후에는 주한미군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

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노정희, 가토 변호사의 각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특히 고영구 변호사님의 강평에 한일 참석자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류회 때마다 통역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리쓰메이칸대 서 승 선생과 엄상준 선생이 통역을 너무 훌륭하게 해 내용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었다.

우리측 사모님들은 오후에는 관광을 하였다. 이 비용은 도쿄측 참가자들이 부담하였다.

저녁에는 빠빠리옹이라는 전통 오키나와 음식 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며일본측 참가자들과 흥겹게 놀면서 정을 나누었다.

라. 넷째날 3. 28.(일)

자유시간을 갖고, 12시 25분 나하공항을 출발하여 14시 4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였다.

4. 소감

가.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교류회

발표주제 선정문제나 장소, 일정 등에서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교류회에 대한 준비역량이 깊어졌음을 말한다.

나. 사전준비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일본측과 평가회의를 갖고, 준비회의를 하고, 우리도 준비모임을 수차례 갖고, 회의에 임했으나,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다. 논문 배부시기가 일본측이 약속된 시간보다 10일 정도 늦게 보내와 일주일 전에야 우리 참가자에게 도착하게 한 것도 문제였다.

다. 다음 교류회는 2001년 가을이나 2002년 봄에 우리 나라에서 열릴 터인데, 이번 교류회를 거울삼아 멋진 교류회가 되었으면 한다.

5. 감사의 말

오키나와 측에서는 대표인 긴조 지카시 변호사, 실행위원인 나까야마 다다까쓰, 가토 변호사, 쓰치다 교수가 특히 수고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아즈사와, 고이게, 구와하라, 하야시, 은용기 변호사가 특히 수고하였다. 샌다이에서 온 오노 테라 변호사는 소감문을 보내주었다. 우리측에서는 역시 윤종현, 백승현, 박성호, 박찬운, 이인호, 노정희, 이유정 변호사 등 준비위원들이 사전 준비와 현지에서의 안내 등으로 고생하였다. 특히 논문을 쓴 노정희 변호사와 자료집 발간 책임을 맡아 고생한 동북아특위 간사 이유정 변호사, 실무책임을 맡아 수고해준 장경주, 최미희 간사의 노고가 컸다. 고영구 변호사님은 10분간의 총괄 평가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4시간이나 단상에 앉아 계셔야 했다. 김진국 변호사는 요령 있는 사회를 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최영도 회장님은 거듭되는 연설을 훌륭히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 53명의 우리측 참석자들은 회의기간중의 강행군을 아무 불평 없이 따라주셨다. 이 분들의 명단을 이 자료집에 실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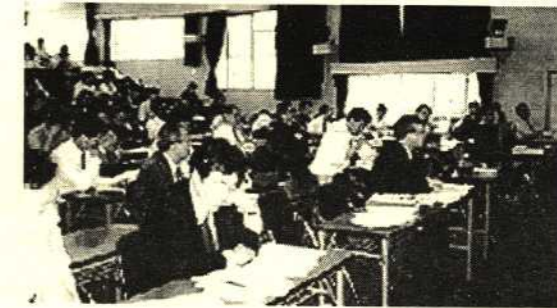
본회의 . 토론 :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일본 미군기지 문제



발표자와 토론자



통역과 사회자



회의장 모습



회의장인 오키나와대학 안에서 - 한국측 참가자들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노정희

1. 문제제기

해방 직후 점령군의 지위에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6.25동란시 유엔군의 일부로 참전하고, 휴전협정 체결의 와중인 1953. 10. 1.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을 허여받고 미군은 이를 수락'하여 계속 주둔케 되었다. 주권국가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에 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마찰이 없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가까이서 일본과 필리핀, 괌 등 아시아지역에서부터 멀리는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전해들어왔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미군정시대를 논의로 하더라도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범죄와 사건 사고, 기지주변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의 파괴, 면세특혜 등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혼란 등을 야기시켜왔다. 거기에 점령군으로 시작된 주한미군의 과거 역사와 그후에도 지속된 예측적 정치구조, 그러한 가운데 터져나온 광주항쟁시의 미군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한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를 되뇌어보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¹⁾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

1) 과거 외국 군대의 주둔시 사용하였던 '기지'라는 용어가 주권 개념과의 충돌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주둔군지위협정상 보다 구체적이고 외연(外延)이

대로 살펴보기 위하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²⁾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처우 등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관하여는 기왕에 다루어진 바도 있고,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용산 미군기지, 을지로 5가 미공병단, 부산 하야리아부대, 미군 제55보급창, 부산 미문화원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미군기지 및 미국사용시설에 대한 이전 및 사용료 문제가 떠오르고 거기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요구가 가중되면서 미군 기지의 사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의 이해를 위해 대한민국 내 미군주둔의 역사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더듬어본 후, 한미주둔군지

좁은 '시설과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자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개념이나 본고에서는 경우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2)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통칭 한미행정협정 혹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나 한미SOFA라고도 하는데 위 협정은 미국측의 비준절차에 따르면 행정협정이나 한국 헌법상으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협정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위협정 중에서 기지의 설정, 사용, 반환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제점을 조항별로 살펴보고 동 협정상의 문제점이 노정된 대표적인 사례들과 미군기지반환운동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변화하는 미군주둔의 의미에 맞추어 앞으로의 한미군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2. 미군주둔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역사

가. 일명 <대전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만약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 전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한 통일전선정부가 되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또 그 승인을 얻어 해방 후의 조국에 그야말로 총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임시정부'로서 귀국할 수 있었다면, 1945. 9. 7. 미군이 3·8선 이남에 점령군으로서 진주하는 역사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역사적 현실은 이와 달리 일본의 항복선언 직후인 1945. 9. 7. 미군은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남한지역의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점령군의 자격에서 한국에 진주하였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군정 치하의 조국에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분단상황에서나마 남한에 독립정부가 들어서면서 1948. 8. 15.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된 바 있다.

그 후 6.25 동란과 함께 참전한 주한미군의 지위를 위해 동란중인 1950. 7. 12.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 간에 교환서한 형식으로 <주

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른바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추가로 1952. 5. 24.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른바 '마이어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동란이 끝난 후에도 1967. 2.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1953. 10. 1. 작성되고 1954. 11. 18. 발표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전문에서 "...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고 선언하고, 제4조에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미군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³⁾

3) 뿐만 아니라 위 상호방위조약의 보충적 협정인 한미합의의사록은 한국측의 이행사항 제2에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이양되게 된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그후 75년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결의가 채택되자 1978. 7. 28. 양국 합참의장에 의하여 '한미연합군 사령부 구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1950년에 조인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부 설치 이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확인함으로써 1994.경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되기까지 위와 같은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현재도 여전히 보다 본질적인 전시 작전권은 한국에 이양되지 않고 있다).

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 및 개정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위 대전협정은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측의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종전후 14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한국민들 사이에 반미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한일협정 체결을 담보로 1966. 7.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전문과 31개조로 된 본협정, 17개조로 된 합의의사록, 8개조로 된 합의양해사항과 협정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나)에 관한 교환서한 등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대전협정에 비하여 많은 부분 형평성을 회복하였고 본협정 자체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1951년 NATO군 지위에 관한 런던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관련 3개 부속문서는 미군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특히 형사관할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지나치게 양보한 규정, 민사청구권 절차의 미비, 미군에 고용되어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인권유린, 면세특혜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등이 한국민의 여론을 부단히 자극하였으며, 80년대 후반 광주민주화항쟁을 계기로 반미감정도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1988년 9월 3일 임신부를 폭행한 주한미군의 가족이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정여론에 불이 붙었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1988년 12월 16일 정식으로 미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협정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그후 2년간의 협상 끝에 1991. 2. 1. 협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문서는 본협정과 동협정의 합의의사록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는 각서교환과 이 2개의 부속문서를 대체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으로 합의된 것이다.

따라서 위 1991년의 협정개정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불평등성이 여전히 남게 된 데다가, 실제로도 1992. 10. 18. 윤금이 씨 살해사건, 1994. 10. 미군 헌병대에 의한 한국인 세 모녀 감금 폭행사건, 1995. 5. 19. 서울 충무로 지하철내에서의 미군들의 난동사건, 같은 해 5. 22. 의정부 미군클럽 여종업원 강간치상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고 한국민들의 관심이 협정의 불평등조항에 쏠리자, 한국정부도 비난여론에 밀려 국방부장관과 한미합동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이 미군측에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보내고, 한미양국은 1995. 11.부터 다시 협정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개정 협상은 1996. 9. 10. 7차 협상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다가 1997. 5. 22.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책협의회에서 미국측이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관하여 양국의 입장이 너무 차이 난다면 연기를 주장하고 결국 같은 달 27. 외무부에 올해엔 개정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통보하면서 그 이후 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게다가 협상의 과정에서 재개정 협상의 내용도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일부 문제에 불과하였고, 시설과 구역 등 공여지의 관리 및 반환문제와 관련된 협정의 불평등요소시정은 협상안에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실정이다.

3. 미군기지에 관한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 주한미군의 병력수 및 미군기지의 현황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육·해·공군을 합하여 약 36,000명이었다. 이들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면적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1969년에는 4억

2,644만평이었다. 이 면적은 1970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감소된 바 있고, 그후에는 소폭의 상승과 소폭의 감소를 겪으면서 1996년말 통계로 볼때 미군기지는 전국 96개소에 총면적 8,025만평에 달하고 있다. 이 면적은 서울시의 반이고 인천시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전용지역⁴⁾이 4,172만평, 지역권지역이 1,027만평, 임시지역이 2,826만평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시설과 구역의 자산가치를 계산해보면 12조 6,300원이 된다고 한다.⁵⁾ 또한 이 중 73% 가량이 민·공유지이다.

이와 같은 미군기지, 즉 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설정·관리·반환 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내지 제5조이고, 관련규정으로는 위 협정 제12조, 제20조, 제24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군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위 협정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시설, 구역의 결정상의 문제점

본협정 제2조 1항 (가)에 의하여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제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정부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위 조항들은 외형상으로는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시설과 구역이 결정

4) 미군공여지, 즉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양도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용도에 따라 전용공여지(미군기지나 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 지역공여지(사격훈련장 안전지대나 미군송유관, 수도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과 같이 원래의 토지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 임시공여지(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로 나뉜다.

5) 1997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자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은 곧이어 시설과 구역의 결정에 관한 위 제2조 1항 (가)의 '합의'를 사문화시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협정 제2조 1항 (나)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가)항에 따라 양 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 체결 당시 미군기지의 개별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협정 발효 이전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소급하여 인정하였다. 게다가 이에 부수적으로 주한미군이 재사용권을 유보한 채 대한민국에 반환하였던 시설과 구역도 이를 합의에 의하여 공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미군이 1945년 점령군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이래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무상으로 접수했던 모든 시설과 구역,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극도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대전협정 및 마이어협정에 의해 전시와 휴전 이후 1966년 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3년 동안 징발했던 모든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이 그대로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인정되고 만 것이었다.⁶⁾

이에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논의시마다 한국의 여론은 위 협정 제2조 1항 (나)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미 설정된 미군기지 및 시설, 구역의 경우에도 꾸준히 각개 미군기지의 필요성, 그 적정규모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지규모를 축소시키고 불필요한 기지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위 협정의 규정은 무엇보다도 자유

6)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 도서출판 힘, 1988, 101쪽. 다만 별도의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등의 절차 없이 위 협정의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사용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1997. 11. 26. 서울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 협정의 위헌성을 심리중이다.

한편 위 공여간주규정과 관련하여, 1991년 개정시 한미양국은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 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해한 바 있으나, 여전히 유보된 재사용권을 포기할 것인지의 결정이 미국 일방에 전속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다. 시설과 구역의 반환절차상의 문제점

협정 제2조 3항은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관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가급적 반환한다는 전제 하에 계속 검토하여 시설과 구역의 사용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규정의 내용상 그러한 의무의 부과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의 필요성 여부, 즉 기지의 반환 여부를 상용국인 미국측의 결정에 일임하고 있음은 주권국가 국민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도 부천시 오정동 미44공병대의 사례⁷⁾에서와 같이 매우 중대한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다.

다만 1991년 개정시 양국은 "1.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 지위협정 2조 하에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검토한다. 2.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미국측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 타당치 않다.

참고로, 독일보충협정은 "군대 및 군속은 그들이 사용중인 시설의 수와 규모가 그들에게 소요되는 최소한도로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수요 정도를 계속 검토한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독일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들의 소요량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수한 협정에 구매됨이 없이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충족할 다른 시설이 대치된 때에는 그 시설은 독일당국에 대해 사전통고를 행한 후에 지체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군대나 또는 군속이 시설 전체를 사용할 필요성을 상실한 결과 그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게 된 때에도 이를 원용한다. 또 전항의 규정에 구매됨이 없이 독일당국이 공동방위임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독일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시설의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환의 원칙을 접수국의 입장에서 명백히 규율하고 있다. 또 미일협정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라는 전제조건 없이 필요성 소멸시 무조건 반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7) 부천시 오정동 미44공병대대는 54. 7.부터 38년간 주둔해오다 92.9.30.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그런데 미44공병대대가 사용하던 부지 13만평은 계속된 미군의 사용권 주장 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야 했다.

라. 시설과 구역의 관리상의 문제점

협정 제3조 1항은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과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비상시에 있어서 그들의 경호와 관리를 위하여 시설과 구역 근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미군의 기지사용은 미군주둔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기지사용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협정은 시설과 구역의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측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관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 내 미군의 무기보유에 관한 적절한 제재가 곤란하다는 점은 한반도 내 핵무기의 보유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국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볼 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1997. 8.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사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열화우라늄탄을 전면 철거하여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에 이송한 사실이 있다.⁸⁾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히 통제될 수

8) 『조선일보』, 1997. 8. 15.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시설 반환시의 원상회복 등의 문제점

협정 제4조는 "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이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산출, 계량하기가 복잡하며 또한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 쌍방간에 상호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해결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상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무조건적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된 미군기지 및 기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상태를 살펴보면, 1994년경 반환된 3개 미군기지(캠프 이즈벨,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 대전의 캠프 에임즈)의 토양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1996. 10. 중순부터 11. 초순까지 3주에 걸쳐

9)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연구』, 도서출판 민, 1995. 85쪽.

동두천, 의정부, 평택, 대구, 부산, 포항, 군산, 원주, 춘천, 인천 등 전국 10개 지역, 30여 개의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군기지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하천은 생활폐수의 무단방류,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고, 유류와 쓰레기 매립으로 토양 또한 광범위한 오염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방치상태가 지속된다면 추후 주한미군기지는 반환된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 불가능한 토지상태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지 내의 환경오염은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고 미군의 관리소홀로 야기된 상당한 오염정화비용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적어도 기지 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보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¹⁰⁾이고, 현재 사용중인 미군기지의 경우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출입, 조사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 시설과 구역의 경비 및 지나친 방위비 분담문제

한국은 최근 IMF구제금융을 받게 됨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진단함에 있어 '정부의 외환예산 중 70% 이상이 국방비와 관련되어 있고 남한 국방비의 4.7%가 주한미군 방위비이며 국방비의 28.3%를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96년도 기준) 속에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장비 획득이나 연구개발비는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사회 각 부분의 균등한 발전

10) 최승환, 「주한 미군기지에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4권 2호 별책, 114쪽.

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한미군사관계의 불합리성과 1995년 이후 달러로 지불된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및 경제난 해소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주장¹¹⁾하기도 한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의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 4조에 따라 한국 안의 시설·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제5조 1항의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같은 조 2항의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비행장 항만 등 각종 시설 구역을 제공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한국은 미국정부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한국은 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경비는 미군이 부담토록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 2. 1. 한국은 미국과의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¹²⁾은 "1991. 1. 1.부터 1993. 12. 31.까지 3년간 위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경비 일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대한민국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11)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2호, 2쪽

12) 동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 16.4%를 부담하고 있던 한국은 향후 5개년간 위비용의 3분의 1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증액키로 합의하였다.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부담 부분은 점차 확대되어 제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1994. 1. 1.~1995. 12. 31.)은 주둔군지위협정 제 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한국은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1996. 1. 1.~1998. 12. 31.)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1991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1995년 3억 달러, 1998년 3억 9,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위와 같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그 직접분담금의 규모만으로도 1998년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8%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형편이다. 그런데 주둔국의 방위비 부담은 직접분담금뿐만 아니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공여지에 대한 임차료(1993년 공여지 연간 임차료는 24억달러라고 한다)나 기지이전비, 카투사 등 인력 및 군수지원비, 각종 면세,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한 대북 경수로 비용부담 등 총체적인 안보비용을 망라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직접분담비에 인력 및 군수, 부동산 지원 등의 간접분담비를 포함해보면 총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약 37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동맹국 중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의 규모이고, 또한 방위비 산정은 주둔국의 구체적 경제력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미국방성의 9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방위비율은 우방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GDP 대

비 일본과 독일의 4배라고 한다.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부담능력 내 방위비 분담의 계속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체적 경제력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4. 미군기지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와 미군 기지반환운동 등

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미군범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신설과 확장 등으로 토지와 가옥 등을 강제수용 당하거나 이른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군들의 폭격훈련이나 미군기의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폐유 등으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와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예컨대, 동두천시의 국제케미칼은 피혁원단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설에 들어갔다. 그런데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국방부는 공장부지가 미군공여지임을 이유로 건물 철거지시를 내렸고 이에 국제케미칼측은 공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언제라도 미군이 철거 요청을 하면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장 건설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 1998. 3. 7.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있는 미8군 메디슨 통신부대에서는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 계곡이 회

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버렸다. 환경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경유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깊게 배어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환경사고라고 지적하였다.¹³⁾ 또한 1998. 8. 경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과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 용산과 춘천, 대구 시내에 자리잡은 미군기지 주변의 헬기비행에 따른 소음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미군기주변의 학교 학생과 주민들은 정상적인 수업이나 TV시청, 전화통화,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이에 크게는 국가의 주권과 자주성의 회복을 위하여, 작게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하면서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아래의 사례 등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간고히 지속되고 있는 많은 노력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나.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용산은 한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즉, 용산은 서울의 동서남북의 흐름을 매개할 수 있는 공간적 중심부에 있다. 그런데 이 용산구 중 105만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되고 있고 이는 용산구 전체 면적의 15.9%이다. 미군기지는 용산구를 동서로 갈라놓아 지역의 발전상을 주체적으로 그릴 수 없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1979년 착공하여 5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인 동작대교가 미군기지를 관통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반감되었고 지하철 4호선도 불필요하게 구부러졌으며 서울 한복판임에도 기지 주변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한다.

13) 『매일경제신문』, 1998. 5. 9.

이러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반환은 서울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었고 드디어 1988년 정부가 6공화국 출범 직후 왜곡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기치 아래 용산 미군기지 및 미대사관 이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해결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0. 6. 25. 국방부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간에 체결된 (용산기지)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는 “(2) 기지 이전은 9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규모 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4)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토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건물통합화 등을 추진해 비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5) 용산 미8군 골프장은 현 남산대지역에 건설중인 대체 골프장을 미국측이 인수한 후 91년 3월 폐쇄하고 용산 골프장 내의 시설은 제거, 이전한 뒤 국방부측에 반환한다”고 하여, 기지 이전의 시기를 못박지 못하고 이전비용 전부를 한국측이 부담키로 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양국은 1991. 7. 기지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 합의안을 발표하고 미국은 기지이전비용으로서 17억 달러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1991. 9. 미군은 기지 내 미대사관 용도의 8만평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전비용도 약 95억 달러를 주장하더니 1992. 4.에는 이전 계획기간을 2000년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는 중에도 1992. 11. 드디어 1959년 이래 미군 골프장으로 사용되어오던 일부 9만평을 돌려받아 용산가족공원을 조성하여 개장하고, 반환될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무성한 제안과 장미빛 계획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은 위와 같은 미군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이와 더불어 이전 예정지였던 평택 주민들의 반대운동도 거세 추진사업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으

로부터 탈퇴한 것을 기화로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위와 같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과정은 기지 이전 협상시 이전시기의 확정 및 비용부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주민운동으로서의 기지반환요구가 기지이전운동이 아닌 기지되찾기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등의 활동

1996년의 준비모임과정을 거쳐 1997. 8. 이후 미군기지반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 운동단체인 군산, 대구, 의정부, 인천, 평택지역의 미군기지땅되찾기시민모임, 부문운동단체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여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 대책위는 위 특별법안을 통하여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을 금하되 만약 국가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주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합의토록 하고 토지는 임대기간,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차계약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미군기지와 공여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지주는 미군이 군사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군기지와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미군기지 안 한국인 노동자 대책 수립, 기지 밖 업소에 대한 대책, 미군범죄 전담 검경제도, 미군범죄 피해자 구조기금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대책위의 소속단체 중 하나인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군산 내 시민단체들은 1997. 9. 초 군산 미공군 당국의 민간 항공사에 대한 부당히 과다한 비용부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998. 3. 이착륙료의 단계적 인

상과 인상률 대폭 감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라.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농민들의 투쟁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왔다. 6.25동란중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은 그후 장좌리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전쟁이 끝나고서도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고 다만 낮에만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영농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1973~4년경 한국 정부는 농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농민들에게 ‘징발 재산매수통지서’를 발행하였고 장좌리 일대 40만평의 땅을 당시 시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상환 보증증권으로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징발된 토지는 곧바로 미군에게 공여되었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필사의 노력을 한 결과 80년대부터는 출입증을 발부받고 또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땅을 찾겠다는 염원으로 장좌리 주민들은 징발된 토지를 환매해달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결론은 미군의 공여지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에 장좌리 주민들은 1997. 1. 20. 서울지방법원에 토지환매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첫째 1973~4년의 장좌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징발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징발상황,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고, 둘째 징발 당시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군사용지로 쓰고 있지 않다면 징발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들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항소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마.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의 투쟁

쇠목마을은 동두천시에서 6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11세대 42명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쇠목마을의 김병규(41세, 농업)씨는 1996년 자신의 소유지(쇠목리 86번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자신의 소유지가 미군공여지임을 통보받았다. 게다가 1996. 3. 15. 미군당국은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쇠목마을에 탱크 8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쇠목마을에 미군공여지문제가 제기되었고, 사격장 부지 확장으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쇠목마을 주민들의 항의와 투쟁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사격장 신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서명운동, 미2여단 정문 및 사격장 신설 현장에 반대 구호 현수막을 내걸고 경운기를 이용 철야농성, 미2사단 정문 앞에서의 항의 시위 끝에 1996. 5. 4. 미군측으로부터 탱크를 철수하고 사격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1996. 7. 10. 주민들은 동두천 쇠목마을 미군공여지 사용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우선 위 사격장 부지가 행정협정 2조 1항 (나)에 의하여 공여지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과 징발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등이 규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거친 후 공여대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이와 달리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 협정에 의하여 당연히

합중국 군대의 소유로 되거나 미군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한다면 위 한미행정협정은 처분적 법률로서 공여대상인 시설과 구역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보상기준이나 보상절차는 물론 시설과 구역의 범위 및 한계, 그 소유자에 대한 통지절차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요건들을 결여하고 있어 재산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한미행정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임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¹⁴⁾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1997. 11. 26. 원고측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협정 제 2조 1항 (나)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5. 결어

미군기지의 설정, 관리, 반환과 방위비분담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의 여타 부분과 무관하게 따로이 떼어내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군사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간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한반도 내 평화통일의 원칙이 확고해져가고,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태평양 연안의 안전과 미국의 안전보장 유지의 측면에 보다 중점이 두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의 존재이유와 규모는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1998. 11. 23. 네번째로 나온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10만 미군주둔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통일 후에도 주

14)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한미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미군철수 주장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1998년 초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반미시위대가 총을 쏘고 인질극을 벌이는 가상상황을 연출하면서 반미시위진압훈련까지 실시¹⁵⁾하였던 일은 극히 일부의 예이지만 이와 같은 한반도 내 복합적인 상황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미군기지 사용의 제반문제는 군축을 통한 한반도 내 평화의 정착과 자주국방이라는 대원칙 하에 꾸준한 국민운동과 연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법과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 도서출판 협, 1988.
-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연구』, 도서출판 민, 1995.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제5권 2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한 행정협정』
-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 자료집, 1995.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공청회자료집, 1995.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1996.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 -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1997.

·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자료집, 『용산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1996.

15) 『세계일보』, 1998. 1. 27. 기사.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문제점

공동집필 에노모토 노부유키(榎本信行), 나카야마 타다가쓰(仲山忠克)
 시마부크로 히덱카쓰(島袋秀勝), 아라가키 스스무(新垣進)
 가토 히로시(加藤 裕), 쓰치다 다케노부(土田武信), 긴조 지카시(金城 睦)
 번역 다나카 다쿠쇼(田中澤鐘), 박찬운, 김선수, 최봉태

서론: 일미안전보장조약체제의 역사와 현상

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는 이른바 냉전체제 하로 들어가고 아메리카(미국)는 소비에트 연방, 중국 등 당시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대외적 팽창을 세계적 규모로 군사력에 의거해서 봉쇄하는 정책을 세웠다(봉쇄정책).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미군기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법적으로 기초하기 위하여 위 각국에 미군기지를 둘 것을 승인하는 상호조약이 잇달아 체결되었다. 일본과의 사이에는 1952년 4월 28일 연합국과의 사이에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일미안전보장조약(舊)을 체결했다. 한국과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었고 대만(중화민국)과는 1954년 12월 2일 미화(美華)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당시의 종주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미안전보장조약으로 미 점령군은 '주류군'이라고 이름이 바뀐 채, 거의 그냥 눌러앉게 되었으며 그밖의 나라에도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3조에서 류큐제도(오끼나와) 등의 지역에 관해서는 본토와는 따로 취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들을 UN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갈 때까지 미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였다. 이 결과 오끼나와는 1972년 5월 15일, 후술하는 <오끼나와 반환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의 통치 하에 남게 되었다. 따라서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는 위 날짜까지 일미안보조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군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지였다. 본토의 미군기지는 거의 다 구 일본군의 시설을 그냥 접수한 것이었는데, 오끼나와에서는 제2차 대전의 지상전투로 점령된 토지 이외에 미국의 통치 하에서 '총칼과 불도저'로 미군에 접수당한 토지까지 기지가 되었다.

그 후 구 안보조약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 등의 비판이 강했기 때문에 개정협상이 진행되어 1960년 1월 19일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현 안보조약, 이하 일미안보조약이라고 함)이 조인되었다. 이 일미안보조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60년 안보투쟁'이라고 불리는 안보폐기를 요구하는 대운동이 일어났으나 결국 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부수하여 <일미지위협정>(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초하는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어서

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것에 의해 일본에서의 미군기지의 사용, 미군의 행동이 정해졌다. 이 협정은 구 안보조약에 부수해서 맺어진 일미행정협정에 비하면 일미 대등에 가까워졌으나 여전히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군에 대한 재판권, 기지사용의 권리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다. 일미안보조약은 일본에 주류하는 미군의 목적을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며 또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기지를 사용하는 미군의 행동범위를 극동의 지역에 한정하고 있다(제6조). 이 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로 된다.

또한 제5조는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작전)에 대하여 "각 계약국은 일본국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미공동작전행동은 일본의 영역 내이어야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도 그 후에 정치적 쟁점으로 된다.

이 조약에는 사전협회의 교환 공문이 부속하고 있어서 미군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 장비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경(특히 핵병기의 배비), 일본 영역 외에서 미군의 작전행동을 위한 기지 사용시에는 미군은 일본정부와 사전에 협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베트남전쟁, GULF전쟁(일본에서는 灣岸戰爭 [wan-gan sen-so])에서도 일본의 기지는 미군기의 출발기지로 사용되었으나 오늘까지 사전협회의 대상으로 된 바 없다. 또한, 오키나와는 미군 통치 하에 있었으므로 본토에 복귀할 때까지 미군의 행동범위에

제한은 없었다.

라.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반환협정>(류큐제도 및 다이토제도[大東諸島]에 관한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정)이 발효되어 오키나와는 일본의 시정 하에 복귀되었다. 이것으로 오키나와는 일본헌법 아래로 들어 왔으나 미군 기지는 거의 그냥 남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에는 "긴급사태에는 핵병기를 다시 배치할 수 있다"는 밀약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협정 당시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거센 투쟁이 계속되었으며 미국은 일본 국내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에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었다. 일미정부는 그 대책이란 뜻도 포함해서 오키나와 반환을 결단·실시하였으며, 또 도쿄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요코타(横田) 기지로 집약하여 기지반대운동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간토(關東)계획'을 결정하였다. 수도권 기지는 대폭 줄어든고 그것들의 군사기능은 요코타 기지나 오키나와의 기지로 이전되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쟁이 종결되었다. 베트남전쟁 이후의 일미 군사협력체제를 규정한 것이 1978년 11월 27일에 성립한 <일미 방위협력력을 위한 지침>(구 일미 가이드 라인)이다.

마.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이른바 동서냉전체제는 붕괴하였다. 미국의 '공산권 봉쇄정책'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의하여 그 의의를 잃고 미군이 아시아에 전개할 필요성은 근본에 있어서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일본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1996년 4월 17일 일미안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전히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

고 있으며 핵병기를 포함하는 군사력은 대량으로 이 지역에 집중되고 미해결의 영토문제, 잠재적인 지역분쟁, 대량과피 병기의 확산 등 불안정 요인이 있다. 이런 속에서, 일미 안보조약 체제는 21세기를 향한 지역의 안정과 번영 유지를 위한 기초이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미안보 재정의(再正義)'라고 불린다. 이 성명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군국주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등의 염려가 표명되었다.

일미 안보조약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 미군의 행동범위는 극동에 제한되어 있었지만(6조) 이 성명에서는, 미군은 '주변사태'라면 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변사태'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미군의 행동범위는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 미군과 자위대 간의 공동작전행동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행동이 자위의 범위에 멈추는지 아닌지가 의문이다(5조 관련).

이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전술한 1975년의 구 가이드 라인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1997년 9월 23일 일미간에서 합의되었다(신 가이드 라인). 이 가이드 라인은 '전쟁 매뉴얼'이라 두루 일컫는 바와 같이 전쟁이 시작된 경우의 미군과 자위대 간의 행동작전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일미간의 합의를 국내법화하는 작업으로써 현재(1999년 3월),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주변사태법안) 등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바. 이상과 같은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역사와 현상에 근거하여 아래에서는 그 전용시설면적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기지문제에 대하여 진술한다.

1.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상황

가. 재일 미군기지의 개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일본 전역에 주류하는 미군기지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에는 25 도도부현(都道府縣: 행정구획의 총칭, 총수는 47)에 있으며, 133개·98,487ha의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북쪽으로는 도(北海道)부터 남쪽으로는 와현(沖繩縣)까지 전 국토에 걸쳐서 산재하며 그 주요한 소재지는 오키나와현에 40개 시설·24,306ha, 호카이도에 18개 시설·34,075ha,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17개 시설·2,140ha, 나가사키현(長崎縣)에 13개 시설·453ha, 도쿄도(東京都)에 7개 시설·1,580ha, 히로시마현(廣島縣)에 7개 시설·522ha이다(1996년 3월 말 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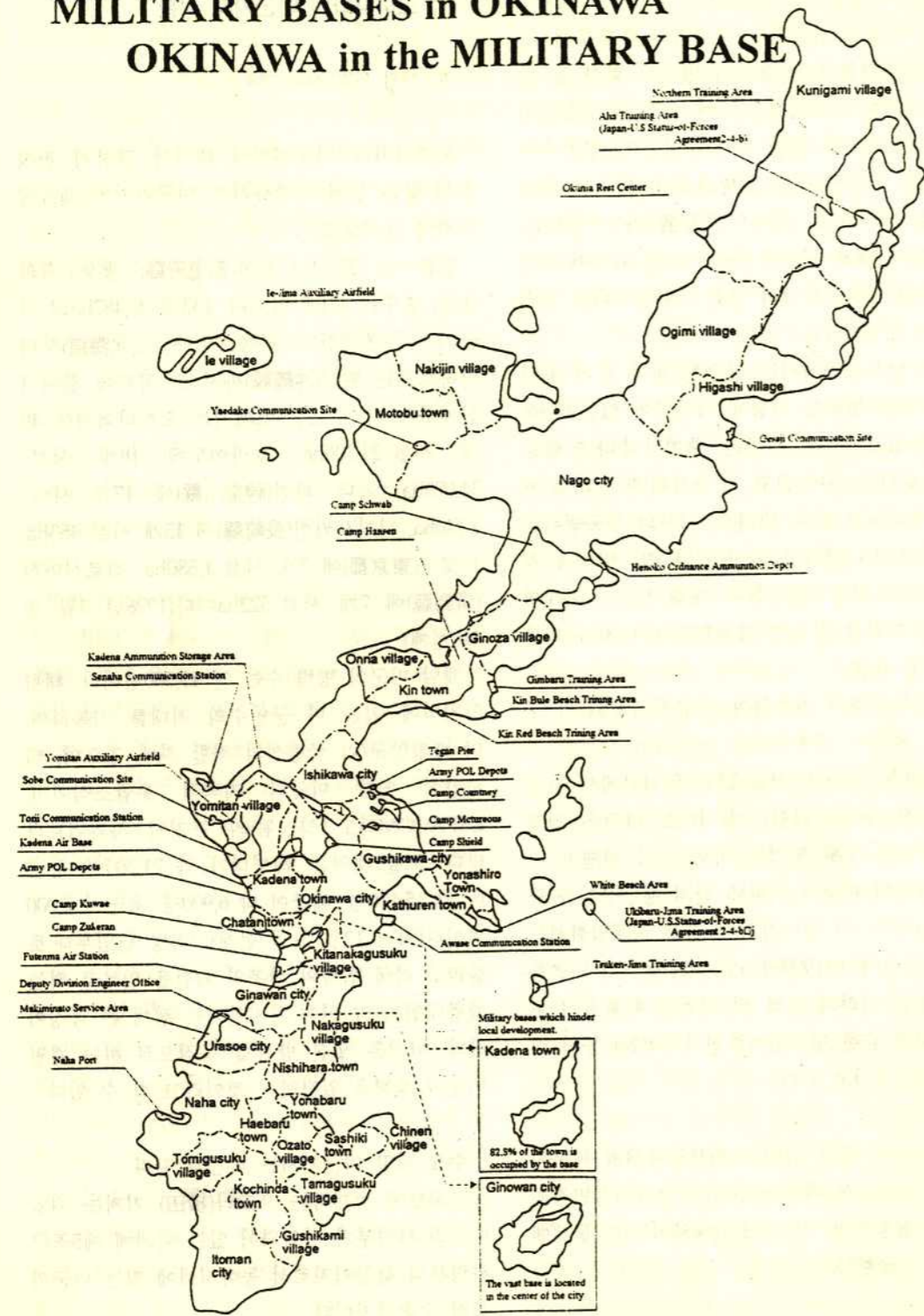
재일 미군의 병력 수는 약 45,300명이다.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군인수의 최대를 기록하며, 미 태평양군(미 국방성의 직할 하에 있으며,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지역적 총합조직이며, USPACOM라고 약칭됨)의 근거지 하와이보다 많다. 군별 내역은, 해병대가 약 21,300명, 공군이 약 15,100명, 해군이 약 6,900명, 육군이 2,000명이다(94년 12월 31일 현재). '작당 난입부대'로 불리고 타국 침략의 선봉의 역할을 임무로 하는 해병대원이 약 반을 차지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일본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재일 미군의 성격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재일 미군기지는 다음과 같다.

도쿄도에 소재하는 요코타(横田) 기지는 재일 미군의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는 이외에 제5공군 사령부의 항공기지로서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의 중심 수송기지이다.

요코수카(横須賀) 기지는, 가나가와현에 소재

MILITARY BASES in OKINAWA OKINAWA in the MILITARY BASE



Source: Okinawa Prefectural Office, JAPAN

하고 제일 미 해군의 중심시설이며 그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포함하는 미 제7함대 소속의 함선 11척의 모항이다. 키티호크의 함재기는 약 85기, 승무원은 약 6,000명인데 그들 병력은 제일 미군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항공모함의 모항으로 해외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요코수카(横須賀)뿐이다. 이와쿠니(岩國) 기지는 야마구치현에 소재하는 미군 해병대의 항공기지이다. 한반도로의 출격 기지의 자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핵병기 조립 작업소가 현존한다.

사세보(佐世保) 기지는, 나가사키현의 사세보만 지역에 있다. 미 해군 및 해병대의 탄약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습 양륙함 페로우 등의 모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모의 기항지이며 원자력 잠수함의 지원기지로 되어 있다.

나.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개요와 특징

오키나와는 기지의 섬이다. 현하(縣下) 53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행정단위) 중 25 시정촌에 걸쳐 40개 시설, 24,306ha의 미군기지가 존재하며, 현 면적의 10.7%(오키나와섬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미군기지는 주택지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있고 "기지 안에 오키나와가 있다"고 얘기될 정도이다.

미군기지의 상황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면적은 전국의 24.7%에 상당하며, 호카이도의 34.6%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군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에 한해서 볼 때에는 실로 전국의 74.9%가 국토면적의 겨우 0.6%밖에 되지 않는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있다. 기타 도도부현의 미군 전용시설은 미군기지 면적의 10.9%에 지나지 아니하며 태반은 자위대의 시설 등을 미군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오키나와현 내의 미군기지 면적은 96.8%가 전용시설이다.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군기지의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지가 32.7%, 시정촌 소유지가 30.4%, 현유지(縣有地)가 3.5%로 전체의 66.6%가 민·공유지이며, 국유지는 33.4%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본토의 미군기지 면적의 87%가 국유지이고 민·공유지는 13%인 것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 본토의 미군기지 태반이 전쟁 전의 구 일본군 기지를 그냥 사용해온 것에 비하여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는 구 일본군 기지 사용뿐만 아니라 미군 점령 하에서 민·공유지의 신규 접수가 행해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용도별 사용상황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용도별 사용상황을 보면 '훈련장'이 시설 수나 면적에 있어 많아, 17개 시설·16,854ha(전 기지면적의 68.7%)이고, 실탄 사격훈련, 낙하산 강화훈련, 부대의 상륙훈련 등이 행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면적이 큰 것은 '창고'이며, 3개 시설·3,280ha(전 기지면적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군이 필요로 하는 탄약의 종합 저장시설 및 군수물자의 보급시설로서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셋째로 면적이 큰 것이 '비행장'시설이고 가데나(嘉手納) 비행장과 후텐마 비행장의 2개 시설·2,479ha이다. 이 양 시설은 둘 다 오키나와 본섬의 중복지구에 있고 게다가 각각 공군 및 해병대의 중추기지로 되어 있다. 그밖에 '군인막사'시설, '통신'시설, '항만'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존재한다.

오키나와 주변에는 미군의 훈련을 위한 수역 29개소 및 공역(空域) 15개소가 설정되어 있다. 훈련수역에 대해서는 상시 출입금지, 사용기간 중 출입금지, 선박의 정박, 계류 투묘, 잠수 및

어망 어업 또는 모든 계속적 행위의 금지 등의 제한·금지가 행해지고 있다.

훈련공역에 대해서는 나하 공항의 경우 발착하는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한 공역이 반경 5mile(약 8km), 고도 2,000ft(600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통상 공역보다 반경에서 1km, 고도에서 300m나 좁아져 있다. 때문에 민간기를 할 수 없이 저공비행을 하므로 조종사의 정신적 압력은 상당하다고 한다.

라.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군별 상황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군별로 구분하면 해병대, 공군, 해군 및 육군인데, 이들의 단독 관리시설 이외에 2개 이상의 군이 공용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아래에 진술하는 시설 수, 면적은 1996년 3월 말 현재이다).

해병대는 시설 수와 면적에서 가장 크며 군인 수는 총 병력 수의 61.1%(17,279명)을 차지하여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군은 8개 시설·2,165ha로 전 기지 면적의 8.8%이며 군인 수는 총 병력 수의 25.0%(7,000명)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은 7개 시설·374ha를 차지하고 전 기지 면적의 1.5%이며 군인 수는 2,905명으로 총 병력수의 10.3%이다. 육군은 4개 시설·386ha로 전 기지 면적의 1.6%이며 군인 수는 843명으로 총 병력 수의 3.0%이다.

이와 같이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는 '작당 난입 부대'로 불리는 해병대가 핵심을 차지하고 이에 반해 육군이 가장 적다. 이것은 오끼나와 주둔 미군기지는 방위보다 침략성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마.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연습·훈련의 상황

미군의 연습·훈련은, 수역(水域), 공역(空域)

및 육역(陸域)에서 항상 행해지고 있다.

각 수역에서는 수대공, 수대수, 공대공 각 사격훈련 및 공대수 사폭(射爆)훈련, 공대지 모의 계기비행훈련, 선박의 계류, 기타 일반연습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육역에서는 캠프 슈와프, 캠프 한센에서 일반 연습, 소총사격, 실탄사격, 폐탄처리, 폭과훈련이 행해지며 북부 훈련장, 긴(金武) red beach 훈련장, 긴(金武) blue beach 훈련장, 긴바르 훈련장, 요미탄(讀谷) 보조비행장 등에서는 일반연습이 항상 행해지고 있다.

해병대에 의한 현도(縣道) 104 호선 넘는 실탄 포격연습은 캠프 한센 연습장에서 1973년부터 1997년 3월까지 24년간에 걸쳐서 행해져 착탄점인 부토다케(ブト岳; 산 이름)에는 약 44,000발의 105mm포, 155mm 유탄포를 박아넣었다. 동 연습장은 생활 도로인 현도 104호선을 봉쇄해서 행해지며 착탄점 부근의 주거 지역에는 유실탄과 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착탄점 주변의 자연 파괴도 심각하였으나, 1997년 4월 이후에야 본도에 있는 5개 소의 자위대 연습장으로 이전하였다.

요미탄 보조비행장에서의 낙하산 강하훈련은 1979년 11월 이후 1996년 6월말까지 185회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말까지 29건이나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시설 밖으로의 강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White beach 지구는 원자력 군함의 기항지이다. 원자력 군함의 기항 상황은 1972년 5월부터 1996년 6월 말 현재까지 116회가 된다. 1980년 3월의 LONG BEACH(순양함)의 기항시에는 평균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었다.

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과 나하 군항의 이설 문제

현재,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문제에서 최대의

초점이 후텐 비행장과 나하 군항의 이설문제이다.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술한다.

(1) 후텐마 비행장은 기노완시(宜野灣市)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군의 거점 비행장으로서 헬리콥터 부대를 중심으로 한 64대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일 미군 기지 속에서도 유수의 헬리콥터 기지로 되어 있다. 동 시설의 면적은 480.6만㎡로 기노완시 전 면적의 25.3%를 차지하며 시설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이다. 동 시설은 항공기의 소음에 의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악영향, 항공기의 추락이나 불시착 등의 사고 다발지역의 진흥개발의 저해 등 그 폐해나 위험성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오끼나와현 및 기노완시는 그 조기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일미 양 정부는 1996년 4월에 발표된 SACO의 중간보고에서 "5년 내지 7년 이내에 충분한 대체시설이 완성된 이후에 반환한다"라고 반환 합의를 발표했으나 대체시설의 현내 이설이 조건이었다.

대체시설의 이전지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나올 때마다 관계 시정촌의 반발을 초래하여, 여기 저기 헤맨 끝에 일본 정부는 1997년 11월에 나고시(名護市) 헤노코(邊野古)의 캠프 슈와부 앞 바다의 해상 헬리포트 기지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본거지 나고시에서는 건설의 찬반에 시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동년 12월 21일에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설 반대표가 과반수(52.85%)를 차지하였다.

오오타(大田) 당시 오끼나와현 지사는 1998년 2월 ① 건설 반대표가 과반수(52.85%)를 차지한 나고 시민투표의 결과 ② 환경의 악화 ③ 현내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해상 헬리포트 기지 건설의 거부를 정식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에 실시된 오끼나와현 지사선거에서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시설로서 오끼나와 본도 북부에 15년이란 기한이 붙은 군민

공용 공항건설안을 공약한 이나미네 게이치(稻嶺惠一) 씨가 오오타 지사를 무찌르고 당선되었다. 이나미네 지사는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팀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나미네 지사의 탄생으로, 해상기지 건설 안을 재검토하는 자세로 변화하고 이나미네 지사의 군민 공용 공항안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사용기간의 한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대체시설은 수직 이착륙기 MV-22 어브즈레의 배비(配備)가 예정되는 등 노후화한 후텐마 비행장의 기능을 비약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여 반대운동이 생기고 있으며 후보지가 구체화함에 따라서 반대운동이 단번에 확대·강화될 것임은 확실하다.

이와 같이 후텐마 비행장의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그 무조건 전면 반환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의 길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나하 군항(나하 항만시설)은 오끼나와현의 바다의 현관인 나하 상항(商港)·나하 부두와 같이 있으며 수송선에 의한 군수물자의 반출입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상황은 1988년 이후 격감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유향 상태이다. 동 시설은 1974년 1월의 제15회 일미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에서 이설 조건이 붙은 반환이 합의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반환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5년 5월의 일미 합동위원회에서 우리소에(浦添) 부두 지구 내에 이설할 것을 조건으로 나하 군항의 전면 반환이 합의되고, SACO의 최종보고에서도 "우리소에 부두 지구에로의 이설과 관련해서 나하 항만시설의 반환을 가속화한다"고 발표된 이후 나하 군항의 우리소에 이설문제가 큰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나하·우리소에의 양 상공회의소가 국제허브항만 정비의 일환으로 우리소에 부두 지구 내의

일부를 군항으로 사용케 하는 군민 공용항 안을 제기하여 양 시의회에 진정한 결과 여태까지 4번 군항 이설 반대결의를 해온 우리소에 시의회가 진정 채택으로 변호사 또 나하 시의회 및 오끼나와 현의회에서도 군항 이설 축진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나하 군항을 우리소에 부두 지구 내로의 이설시 ① 버스 수가 8개에서 12개로 증가하는 것 ② 수심이 9.7m부터 11~15m로 깊어지며, 나하 군항에는 기항할 수 없었던 기키호크(8만 톤) 급의 공모나 강습 양륙함 페로웃(4만 톤) 급의 대형 함선과 사전 집적 부대의 대형수송선단(5만 톤 급)의 입항이 가능해지는 것 ③ 나하 군항에 한 기도 없었던 대형 기중기가 12기 설치되어 군수물자의 수송 운반이 비약적으로 효율화하는 것 ④ 이설선에는 인접해서 마키미나토(牧港) 보급기지(재오끼나와 보급 창고의 80%가 집중)가 있고, 그것하고 일체가 되어서 보급 기능이 대폭 상승하는 것 등으로 보아서 군사기능의 확대 강화이며 다름 아닌 고정화임이 분명하다. 또 최근의 신문에 의하면 미군은 우리소에 부두로 이전한 후의 구상으로 강습 양륙함에 병력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범용 양륙정의 접안용 벽을 배치하여 나하 군항의 수송기능 확충과 아울러 해병대의 출격기능도 상정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나하 군항의 우리소에 이설은 기지의 정리·축소, 철거를 구하는 현민의 요구에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소에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전 현민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다. 나하 군항에 대해서 반환합의 후 20년 이상이나 반환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건부 이설이 어떻게 비현실적인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2. 미군기지로 인한 오끼나와의 피해 상황

가. 머리에

오끼나와에 심하게 집중되고 있는 미군기지는 오끼나와도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집중된 중·남부 지역에 몰려 있어 오끼나와현의 도시 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방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항공기소음, 전투기, 헬리콥터의 추락사고, 기지공해 등 현민·주민에게 여러 가지의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오끼나와현 내에서 많은 수역·공역이 미군의 관리 하에 있어 오끼나와현의 민간인들은 바다도 하늘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끼나와현의 미군기지에는 약 5만 명을 넘는 미 군인·군속들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군인·군속 등과 현민·민간인 간에 민형사상의 문제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오끼나와에 있어서 미군기지는 틀림없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나. 항공기 소음

미군기지부터의 항공기 소음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데나 비행장 및 후텐마 비행장은 둘 다 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양 비행장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피해는 광범위하여 11개 시정촌의 48만 명(오끼나와현 인구의 약 38%)에 달하고 있다.

가데나 비행장에서는 F-15C 전투기 등의 상주에 더하여 항공모함 전투기나 국내외부터 날아오는 항공기에 의한 이착륙, 터치&고 등의 통상 훈련 외에 임시로 실시되는 ORI 연습(행동태세 관찰)이나 4분기마다 실시되는 롤리 연습(현지

운영태세훈련=ORI 연습의 예행연습), 주택지역에 가까운 주기장에서 엔진 조정 등이 행해짐으로써 소음 발생원이 되고 있다. 그것들의 소음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은 심하게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근의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되고 주변 주민들에는 청력의 이상이나 피로의 가중 등의 증상이 출현되고 있다.

후텐마 비행장에서는 헬리콥터 등의 항공기 이착륙훈련, 미간지역 상공에서의 헬리콥터 선회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오끼나와현과 관련 시정촌이 1996년에 공동으로 실시한 양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에 의하면 35개 측정지점 중 19개 지점(54.3%)에서 환경기준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상시 측정지점에서 하루 평균 70dB 이상의 소음 발생 횟수는 가데나초 야라(嘉手納町屋良; 마을 이름: 가데나 비행장 주변)에서 98.9회, 기노완시 마에하라(宜野灣市眞榮原; 후텐마 비행장 주변)에서 64.9회를 기록하였다.

오끼나와현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항공기 소음에 의한 건강 영향조사」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특히 가데나 비행장 주변에서 지속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청력의 손실, 높은 저체중아(低體重兒) 출산율,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요 관찰행동(要觀察行動)의 다발 등 항공기 소음에 의한 주민의 건강피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 미군 연습 등에 의한 피해

캠프 한센에서 실시된 이른바 '현도 104호선 넘는 실탄 포격연습'은 1997년 3월의 연습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1973년부터 1997년 3월까지 180회의 실탄 포격연습이 실시되었다. 동 연습에서 사용하는 155mm포의 최대 사거리

는 30km이고 동 기지의 규모(동서 약 13km, 남북 약 4.2km)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다. 연습시에 착탄점에서 생기는 폭발음이나 진동은 무서울 정도로, 착탄점 부근의 주택·학교에서는 연습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생활이 위협받고, 포탄 파편 낙하사고 등으로 부근 주민들은 사고발생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연습에 의하여 1997년 12월 말까지 137건의 원야(原野, 야지) 화재가 발생했고 착탄점 부근에는 광범위하게 초목이 사라졌으며 근해의 적토 오염의 원인으로도 되고 있다. 현재 동 기지 내에서의 현도 104호선 넘는 실탄 포격연습은 폐지되었으나 실탄을 사용한 사격훈련, 폭발훈련, 폐탄 처리훈련 등은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피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미군의 낙하산 강하훈련은 현재는 이에지마(伊江島) 보조비행장에서만 실시되나 1996년까지는 요미탄 보조비행장에서도 실시되었다. 요미탄 보조비행장에서는 연료 탱크 낙하로 인한 소녀 압사(1950년), 트레일러 낙하로 또 다른 소녀 압사(1965년)의 비참한 사고 이외에 시설 외의 농경지·민가 등에 훈련병·설비의 낙하 등 여태까지 29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지마 보조비행장에서도 1992년에 2건의 낙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군 시설·구역부터의 적토 유출이 기지 공해로서 문제되고 있다. 1989년 10월에는 캠프 한센 내의 도시형 전투훈련시설 건설공사가 한 원인이 되어서 온나손 신카와(恩納村新川) 연안 해역이 적토로 오염된 사태가 생겼다. 또한 1992년 5월에는 캠프 슈와브 내의 기지간 연락도로의 개수공사가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나고시 구시구(名護市 久志區)의 수도 취수원의 적토 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군 온나 통신소는 1995년 11월 30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오끼나와현에 반환되었다. 그 기존 건물의 해체 및 토지의 복원공사중에 오수처리

구내의 오니 및 유출구 부근으로부터 카드뮴, 수은, PCB, 연, 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그 후의 조사로 오수처리장 내의 오니가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도리시마 사폭장(烏島 射爆場)에서 훈련중인 미 해병대의 하리아기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합계 1520발의 열화(劣化) 우라늄을 함유하는 철갑 소이탄(徹甲 燒夷彈)을 훈련에서 사용·발사하고 있음이 발각되었다. 1997년 현재 아직도 233발밖에 회수하지 못했으며 도리시마(무인도)에 가장 가까운 구메지마(久米島) 주민들의 건강이나 지역에 대한 악영향이 걱정된다.

미군의 항공기 사고는 복귀 후 1997년 12월 말까지 고정 익기(固定翼機)에서 68건(추락 23건, 부품낙하 16건, 착륙실패 13건, 불시착 13건), 헬리콥터에서 62건(추락 13건, 부품낙하 9건, 불시착 36건), 합계 130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사망 22명, 행방불명 24명, 중상 9명, 기타 부상 10명이 발생되었다.

라. 미군 구성원 등에 의한 범죄

복귀 후부터 1997년 12월말까지 미군 구성원 등에 의한 형법범 검거 인원은 4,694명이었고, 검거 건수는 4,867건이다. 그 중 흉악범(살인, 강도, 방화, 강간)은 517건에 달하며 민간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12건 발생하였다. 전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미군 구성원 등의 비율은 약 5.7%이다. 검거인원은 1995년에 62명, 1996년에 33명으로 복귀 직후와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으나 미군 구성원 등의 범죄가 주민·현민들을 위협 속에 살게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다름이 없다.

나하 방위시설국에 의하면 1996년 도중에 발생한 기지 관련 사고·사건은 공무상·공무 외 합하여 783건에 달하나 그 대부분은 미군 구성원 등의 교통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

해자의 민·형사상의 구제가 문제로 되어 있다.

3.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형성과정과 법률문제

가. 구 일본군 비행장의 건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건설은 구 일본군 비행장의 이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구 일본군은 패전 1~2년 전에 오키나와 본섬·이예지마·미야코지마(宮古島)·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합계 11개의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일본군은 비행기가 거의 없고, 비행장을 미군이 사용함을 두려워하여 곧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많은 비행장이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용으로 활용되었고, 곧 미군기지로 되었다. 예컨대 아시아 최대의 기지인 가데나 비행장은 구 일본군의 나카(中) 비행장을 미군이 10배로 확장한 기지이며 구 소유자들이 다른 구 일본군의 비행장처럼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토지를 접수할 때에는 구 일본군 담당관이 촌 사무소에 와서, '비행장 예정지가 되었으니 가옥이나 농작물을 철거하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명령하고 촌의 회계 담당이 구장(區長)을 통해서 구 소유자들에게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 매매계약 등은 없었다고 한다.

오키나와현의 조사에 의하면, 전쟁중에 구 일본 군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합계면적이 1,300만 m² 이상이었으나 니시하라초·우리소에서·미야코지마 등에서는 구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있다. 일본 본토의 구 일본 군용지의 대부분이 전후에 반환된 것과 비교해서 차별이 남았다.

나. 미군 점령에 의한 기지의 형성

1941년 4월 1일에 오키나와 본도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병사의 저항을 쉽게 억압하기 위하여 포로 이외의 일반 현민도 12개소의 수용소에 모

았다. 수용소 이외의 야영지가 그냥 미군기지로 된 예도 많다고 한다. 수용소로부터 이주가 허가된 직후, 구 거주지가 미군기지에 둘러싸여서 이주처가 없는 현민을 위하여 미군의 지휘 하에 소유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사용권이 배분된 '할당 토지'도 미군기지에서 파생한 초법규적인 존재였으나 미국은 아무런 손실보상도 하지 않았다.

덧붙여서 미군기지의 사용료마저도 강화조약의 발효까지 그냥 무상이었다. 일본군 포로나 현민들이 모아진 수용소 이외가 전장이었던 전투중의 미군 캠프 용지는 미국측이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헤이그 규칙) 23조(사)에 기초한다고 한 것과 같이 "일본의 국현유지·시정촌유지 이외에 사유지라고 하여도 땅세도 손해보상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군의 정식 항복에 의해서 전쟁이 사실상 종결한 1945년 6월 23일 이후에는 미 군용지의 유지 존속·신규 취득과 보상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국 측이 새로운 법제조치를 할 일 없이 미군 캠프를 어느 정도 정리 통합한 자리에 구 주거자를 수용소부터 귀환시키면서 미군기지의 무상사용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켰다. 그리고 미군이 후에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헤이그 규칙 52조도 동산에 관한 규정이지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협정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고 말았다.

다. 동서 냉전구조 하에서의 미 군용지 강제 접수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가장 비참한 경험을 당한 것은 강화 발효 후의 새로운 대 공산권 기지 건설에 있어서였다. 유골·가재도구 및 농작물을 지킬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무장병으로 소유자를 격리시킨 상황에서 불

도저로 가옥과 분묘를 밀어버렸다. 마와시촌 아메구(眞和志村天久) 지구 오로쿠촌 구시(小祿村 具志) 지구(지금은 나하시), 이에손마자(伊江村 眞識) 지구, 기노완손 이사하마(宜野灣村 伊佐 浜) 등에서 이 지구에서의 소유자들의 저항은 허무하게 느껴졌으나 후에 온 섬이 덩어리가 되어 토지투쟁으로 발전시킨 폭발적인 투쟁력은 이 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미군용지 사용의 법적 근거 만들기 책모

소유자의 합의를 결여한 미군기지 사용권의 근거 만들기는, 1952년 4월말에 강화 이전의 2년 분의 땅세와 교환으로 계약하려고 했으나 소유자측으로부터 명확하게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미군은 지대 보상일 뿐이라고 하면서 수령케 하고 다음 해 12월 5일 공포의 부고 26호에 의해 일방적으로 땅세 지불로 '묵시의 계약'에 의한 임대차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강권적인 직접 군사지배의 미군 권력 하에서는 오키나와의 조국 복귀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미 군용지에 대한 반대투쟁도 땅세의 일괄지불 반대, 적절한 보상의 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신규 토지접수 반대의 4개 원칙을 내건 조건투쟁이었으나, 이와 같은 원칙도 후퇴시키는 타협을 강요당하였다. 즉, 예외적인 일괄 지불은 인정하고, 신규 토지접수도 불모의 산림에 관해서는 받아들이고, 미군이 서두르던 미사일 기지도 건설되었다.

적정한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일본 본토와 같은 정도의 지세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시정권 반환 직후에 곧 6배로 인상할 정도로 지세가 낮게 책정되었다. 결국 토지 소유자의 '대여 아니하는 자유'는 부정된 채였다.

마. 베트남전쟁을 위한 미군기지 확장 책동

베트남전쟁을 위한 미군기지 확장 책동으로서 주목을 끈 것은 본도 중부의 구시카와시(具志川市)의 미군의 덴간잔교(天願棧橋) 가까이의 곤부(昆府) 기지의 확장 계획이다. 동 잔교가 가데나 기지에도 가깝고 북베트남으로의 폭격병기 수송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 소유자들 중심으로 한 반대조직이 투쟁 강화를 위한 감시용 건물들을 만들어서 저항하여, 미군도 6개월마다 강제수용을 연장하는 선언을 몇 번이나 통고한 후, 드디어 기지확장은 단념되고 말았다.

미군은 베트남전쟁을 위하여 나하 군항·본도 중부·가쓰렌촌(勝運村)의 white beach, 본도 북부의 긴초(金武町)의 blue beach, 기노자촌·히가시촌·구니가미촌(宜野座村·東村·國頭村)에 걸치는 북부훈련장을 활용하였으며, 복귀 후에 구니가미촌 이부다케(國頭村 伊部岳) 정상에 헬리포트를 제때대로 건설 공사하여 항의를 당한 일도 있었다.

바. 복귀 후의 미계약 군용지의 취급

1969년의 일미 공동성명과 1971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하여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침이 확인되고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계속해서 미군용지로 제공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일부를 자위대 용지로 물려받기로 미군과 약속하였다.

3만여 명의 군용지 소유자의 약 10%가 미계약인 채 복귀를 맞이하여 그 중의 약 1,000명은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군용지주(이하, '반전지주'라고 부름)회'를 결집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에서의 공용지 등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공용지법)을 억지로 성립시켰다. 정부는 <미군용지 특조법>을 오키나와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지적 불명상태를 들었지만 재산권과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

법한 침해와 차별을 감행하여 자위대 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용지법에 의한 잠정 사용기간은 5년간으로 정해졌으나 그것은 미군용지 특조법 부칙 2에서 규정된 잠정 사용기간 6개월의 10배이며 계약체결 강요 기간으로 활용하려고 한 의심까지 있다.

형성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용지법은 일본정부가 기득권적으로 미국이나 류큐정부로부터 인계할 수 없는 미군용지의 복귀 후의 인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적법화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우리 나라의 토지수용 법제를 무시한 입법이 되고 말았다.

사. '잠정'사용권을 소생시키는 입법조치

일본정부는 공용지법의 적용으로 강제사용을 행한 후 그 잠정 사용기간 중에 반전지주들을 쫓아낼 것을 피하여 그 지주들에게 철저한 공격을 가했다. 우선 계약한 지주에만 지세 이외에 협력 사례금을 추가해서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한편 반전지주에 대해서는 강제사용에 의한 10년 또는 5년 분의 일과지불 땅세를 수령한 해의 소득으로 하여 누진과세의 불이익을 입히고, 지적 불명인 상태로 군용지를 반환했다고 칭하여, 지적 확정 및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10 수년간이 걸림에도 원상회복 보상으로서 1년 분의 지세 상당액(현재는 군전법[軍轉法]으로 3년분이 되었다)으로 정리해버렸다. 그리고 계약 지주부터 미계약 지주에게 "이와 같은 군용지 반환상태에 휘말리게 되는 계약 거부를 중지하라"고 공격케 하였으며 방위시설국 자체도 집요한 미계약 지주 무너뜨리기 공작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공용지법 실효까지 반전 지주들을 190명 이하로 감소시켰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의 지적 명확화 입법요청에 대하여 종전의 소극적 자세로부터 지나치게 적극적인 자세로 방향전환을

하여, 잠정사용이라는 공약도 어기고 실효 4일 후인 1982년 5월 18일에 지적명확화법을 제정하여 그 부칙에서 실효하고 있었던 잠정사용권을 소생시켰으며 게다가 5년간 기간을 연장하였다.

아. 미군용지 특조법(特措法)의 발동

소생되었다고 하는 미군기지의 잠정사용권도 1982년 5월 14일에 기한이 다 되었다. 정부는 그 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미군용지 특조법을 20년만에 발동하였다. 오키나와 방위시설국은 152명의 반전지주의 토지에 총리대신의 사용 인정을 거쳐서 오키나와현 수용위원회에 5년의 강제사용을 신청하여 신청한 대로 사용체결을 얻었다.

1982년부터의 강제사용권이 1987년 5월 14일로 기한이 만료하는 데 대비하여 정부는 다시 미군용지 특조법에 의하여 20년간의 사용기한의 체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수용위원회는 반환 합의되고 있는 나하 군항을 5년, 기타를 10년으로 하는 강제사용을 재결했다.

정부는 1992년 5월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반전지주와 약 70명의 새로운 반전지주에 대하여 미군용지 특조법에 의해서 10년의 강제사용을 신청하여 5년의 재결을 받았다.

자. 현 지사의 대리서명과 미군용지 특조법의 개정

나하 방위시설국장은 1997년 5월 14일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군용지 사용을 위하여 1995년 3월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 지주들을 대신해서 소재지의 시정촌에 구했는데 나하 시장, 오키나와 시장 및 요미탄 촌장이 합계 35명분의 토지에 대하여 서명을 거부하자 현지사에게 서명 대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었던 오오타 당시 지사는 1995년 9월 4일의 3명의 해병대원에 의한 소녀폭행사건

에 대한 현민의 분노와 기지 철거요구의 고조를 배경으로 하여 서명대행을 거부하였다. 여기서 총리대신이 오키나와현 지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명령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총리대신의 전면 승소로 이어졌다.

그 후의 강제사용의 절차 진행중에 1997년 5월 14일의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새로운 사용결재를 할 수 없음이 분명히 되자 기한 만료 후의 불법 점거상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23일에 미군용지 특조법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사용결재가 될 때까지는 '잠정사용권'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기한 만료 후의 불법 점거상태를 합법적으로 포장해주는 것이다.

4. 미일 지위협정과 그 문제점

가. 미일 지위협정이란

1952년 대일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연합군의 점령 종료와 동시에,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에는 미군의 계속적 주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구 미일 안보조약과 그 실시규정인 구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1960년, 구 안보조약을 대신하여 현행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동조약 6조에 의한 재일 미군의 주둔에 관한 협정 체결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현행 미일 지위협정이며, 동 협정은 구 행정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이에 대응하는 협정은, <북대서양조약 당사국 간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NATO군 지위 일반협정 1951년) 및 <독일 연방공화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관하여 북대서양조약 당사국 간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보충하는 협정>(독일 보충협정 1959년 체결, 1993년 개정)이다. 한국에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재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지위협정 1966년)이 있

다. 미일 지위협정은 일찍부터 미군에 대하여 특권적인 지위를 주는 차별적 협정이라고 문제되어왔다. 오키나와현은 1995년 9월의 소녀 폭행 사건 이래 현 내에서 높아진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와 미일 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 동년 11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미일 지위협정 중 10개 항목의 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조치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의하여 1995년 11월에 겨우 설치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통합·축소문제에 관한 특별행동 위원회'(SACO)가 1996년 12월 2일에 제출한 최종보고에서, 몇 가지 점에서 지위협정의 운용을 개선하는 것을 합의한 데에서 그쳤다. 그 중의 몇 가지는 각 항목에서 살피기로 한다.

아래에서 동 협정 중 주요 조항에 대하여 그 개요를 설명한다.

나. 기지 제공의무

미일 지위협정 2조는 시설 및 구역의 사용에 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미국은 안보조약 6조에 기초하여 일본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이 허용된다.
- ② 개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규정은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체결한다.
- ③ 미국은 시설 및 구역의 필요성을 반환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검토한다.

동조의 첫번째 특징인 '전국토 기지방식'이라고 불리는 바와 같이 규정상 미군기지 제공을 위한 지역·기간 등의 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영국이나 필리핀에서는 개개의 기지마다 협정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아무리 집중

해도 그것을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기지 제공절차는 일본의 관료와 재일 미군간부로 구성되는 미일 합동위원회(25조에 규정)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의사록은 공개되지 않고 국민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독일 보충협정 48조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파견국 군 당국부터 독일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쌍방이 그 필요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두번째로, 시설 및 구역의 반환에 대하여 미일 지위협정에서는 오로지 미군의 필요성만이 고려되고,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요망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독일 보충협정 48조 5항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정 시설의 사용에 대한 독일 측의 이익이 분명하게 상회하는 경우" 독일정부는 그 시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둔군은 이 청구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독일측의 이익"이란 부속의정서에 의해 "독일 민간의 기본적인 필요성, 특히 국토정비, 도시계획, 자연보호, 농업상 및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기지를 위해 제공할 것이 미일 사이에 합의된 시설 및 구역 중에는 사유지가 포함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오키나와에 많다. 대상 토지 소유자는 기지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와의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 미군용지 특조법(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이전보장조약 제6조에 근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강제 수용·사용절차가 취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항의 소송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상술한다.

다. 형사재판권

미일지위협정 17조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미일의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오로지 미국측의 재산 또는 안전에 대한 죄와 공무집행 중의 죄에 대한 제1차 재판권은 미군 당국에 귀속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제1차 재판권은 일본에 귀속한다(동조 3항).
- ②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미군인·군속인 피의자의 구금은 일본에 의한 기소까지는 미국측이 행한다(동조5항 C).

동조에서 첫번째 문제는 미일의 제1차 재판권의 귀속이, '공무중'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점인데, 이 판단이 미군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일 합동위원회의 합의에서는 그 판단은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지휘관"이 내린다고 되어 있으며, 지휘관은 '공무중'이란 증명서를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반증이 없는 한 공무중에 속한다는 사실의 충분한 증거자료로 된다"고 되어 있다.

문제 사례를 하나 든다. 1974년 7월 오키나와 본도에 가까운 이에지마의 사격장에서, 남자가 연습 종료 후에 풀베기를 하고 있다가 군용자동차에 쫓기고 신호탄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초 일본의 재판권을 전제로 수사되었지만 10일 후에 갑자기 미군으로부터 '공무중'이란 증명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공무중'이란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에 '공무중'이라고 판단된 범죄 1,052건 중에서 군사재판은 0건, 징계처분은 겨우 99건이란 숫자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군의 아래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미군은 기소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정부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일반 범죄의 피의자는 체포되면 기소할 때까지 최대 23일간 신체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용감옥이라고 불리는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고, 상세한 자백을 획득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심문을 받게 된다. 신병구속 중의 피의자 심문은 오전 9시경부터 심야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휴일의 심문도 일상적이다.

이에 반하여 신병인도가 거부된 미군병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미군의 헌병이 심문을 위해 출두하게 하지만, 그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정되고 또 휴일의 출두는 없다(단, 소녀폭행사건 이래 심문시간의 연장은 인정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점은 일본의 자백중심주의 수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미군병사만 우대하는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앞에 쓴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소녀폭행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피의자 미군병사가 기지 내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의한 체포가 불가능했고, 미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미군 헌병이 일본 수사기관까지 연행하여 임의의 심문이 행해지는 데 그쳤다. 중대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수사기관이 체포조차 할 수 없다는 시대에 오키나와 현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1995년 이후의 큰 현민 운동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받아서 1995년 10월 25일 미 군인에 의한 살인 및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은 피의자의 기소 전의 구금의 이전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도 호의적 배려를 한다"는 운용 개선의 합의를 하고, 기타의 중대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충분히 배려한다"고 했다. 결국 차별적인 미일 지위협정의 규정은 그냥 두고 미국측의 배려

로 빠른 시기에 신병인도를 할 경우가 있다는 정도의 개선이었다. 따라서, 예컨대 1998년에 오끼나와현 기타나카구수쿠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음주운전)의 여고생에 대한 추돌·뺑소니사고(고교생은 수일 후에 사망)의 피의자인 미군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고입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까지 신병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덧붙이면 독일 보충협정 22조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신병구속에 관해서 "파견국 당국은 억류를 어느 때라도 독일 당국에 이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건에서 독일 당국의 억류 이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배려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규정상으로는 기소 이후도 파견국(미국)이 신체구속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에서 미일 지위협정과 다르나, 반대로 '호의적 배려'의 조항에 의해서 조기의 신병인도가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민사재판권

미일 지위협정 18조는 청구권·민사재판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미군의 공무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전액 지불하되,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국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25%를 일본측이, 75%를 미국측이 각각 부담한다.

② 미군의 공무 외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미군인 또는 미군 피용자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측이 청구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사정하여 미국측에 보고한다. 미국은 그것을 받아 위자료의 지불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군의 공무중의 손해 중 미국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마저 일본이 그 25%를 부담한다고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무성은 "미군 주둔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나 설명이 되지 못한다.

미군은 덧붙여 도쿄도에 있는 요코타 기지의 소음소송에서 일본정부가 주민에 대하여 지불을 명령받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군의 운영에 의한 소음공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공무 외의 손해 중 약 90%는 교통사고이며(오끼나와의 경우), 미군병사의 자가용의 다수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미군병사는 자력이 없고, 또 단기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가 많고, 귀국 후에는 소송절차도 강제집행절차도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은 곤란했다.

이 때문에 18조의 행정절차에 의한 보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동 절차에서는 미군의 지불은 어디까지나 재량에 의한 지불이며, 더구나 보상금액도 극히 낮고, 절차에 1~2년을 요하고, 현실적인 구제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예컨대 1996년 1월에 오끼나와현 자타초에서 세 모자가 미군 병사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1998년 1월에 미군은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액의 약 40%인 2,500만엔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SACO 최종보고에서 민사청구권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운용개선이 합의되었다.

- ① 미군 보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보험 가입의 의무화
- ② 종래부터 존재하던 미국정부에 의한 위자료 선불제도의 절차 신속화
- ③ 위자료를 지불하기까지 일본정부에 의한 새로운 무이자 융자제도 설치
- ④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 금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불액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한다.

마. 환경문제—현상회복 의무의 부존재

미일 지위협정 4조는 시설·구역의 반환시에 미군에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3조에서 시설·구역의 배타적 사용권이 규정되고 일본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것에 의하여 기지 내의 환경오염은 방치된 상태이다.

최근에 보도된 재오끼나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의 사례를 다음에 든다.

1995년 11월에 반환된 온나통신소 철거지의 복원공사중인 1996년 3월, 오수처리조로부터 PCB, 카드뮴, 수은, 아연, 비소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구메지마 앞 바다의 무인도 도리시마 사폭장에서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에 걸쳐서 열화 우라늄탄 1,520발을 쏘아댄 것이 1997년 2월 10일에 판명되었다.

1997년 2월 20일 자탄초의 캠프 즈케란 안의 배수관으로부터 고농도의 PCB가 검출되었다.

1998년 8월 오끼나와의 본토 복귀 전(1972년 이전)에 가데나 기지 내에서 PCB를 포함하는 변압기의 폐유가 버려졌다는 기지 종업원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오끼나와 현의회 등은 기지 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미일 지위협정 3조에 근거한 배타적 사용권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군은 기지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하여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없는 채 반환된 철거지의 이용에는 극히 큰 위험이 남게 되었다.

또한 캠프 한센에서의 실탄 포격연습에 의한 온나다케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불발탄의 처리를 포함해서 그 회복의 곤란성이 지적되고 있다.

바. 군 및 군인·군속에 대한 특권의 부여 등

미일 지위협정은 이외에도 미군 및 군인·군속,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1) 공항, 항만에서의 출입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이동
미군의 항공기 및 함선은 입항료나 착륙료가 과해지지 않고 일본의 항구, 비행장에 출입할 수 있다(5조 1항).

미군,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기지간의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5조 2항).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지간 이동이라고 칭하여 완전 무장한 해병대가 기지 외의 일반도로에서 행군 훈련을 하는 예를 오끼나와현 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오끼나와현은 몇 번이나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동에 관해서 군용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있다(5조 2항). 이 때문에 예컨대 오끼나와 자동차도로만 하여도 미군은 연간 2억 450만엔의 통행료의 지불을 면제받고 있다(1994년).

또한 본조와 관련하여 제공시설 외에서의 미군기에 의한 저공비행훈련의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된다. 시설외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는 미일 지위협정상 아무 규정도 없으며, 한편으로는 협정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항공법 특례법에 의하여 일반 항공기에 대하여 규제되고 있는 최저 안전고도의 준수규정이 미군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임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실태이다.

(2) 출입국과 검역

미 군인은 여권이나 사증에 관한 법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군속·가족은 외국인 등록이나 관리에 있어서 법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9조). 이 때문에 검역관련법도 사실상 미군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염병 등을 가지고 들어올 위험이 오끼나와현 등에서 지적되고 있

다. 한편 독일 보충협정 54조에서는 검역에 관해서 독일법의 적용을 명기하고 있다.

(3) 항공·통신

항공관제에 관해서는 "간밀하게 강조하여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집단안전보장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정합 하기로 한다"(6조)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운영에 의하여 민간항공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으로의 진입은 미군 가데나 기지에 의한 가데나 진입관제에 의한 관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다. 이에 나하 공항에서 민간기의 북쪽을 향한 이착륙 코스는 약 27km에 걸치고 고도 300m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서 그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4) 차량

미군인, 군속 및 가족은 미국의 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10조 1항). 가족들까지 이와 같은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독일보충협정과 다른 점이다.

또, 10조 2항은 군용차량에는 번호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1995년까지는 설치되지 않았고, 지위협정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5) 관세·조세의 면제

미군 및 군인, 군속과 그들 가족에 대해서는 관세가 대폭 면제되고 있고(11조), 국세 및 지방세에도 역시 많은 면제규정이 있다(12조~15조).

예를 들어 이 때문에 일본의 석유 각 업체가 1989년부터 1995년의 7년간에 제일미군에게 판매한 제트 연료 등의 석유세 등 합계 약 226억 엔이 면제되었다는 숫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군은 막대한 이익을 받고 있다. 일례로, 미군인의 개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경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이지만 경감조치가 취해

져 있어서, 이로 인한 오키나와현에서의 세수입 감소가 연간 약 1억엔에 달한다.

사. 오모이야리 예산(백력예산)

미일 지위협정 24조에서는 일본은 미군주둔 비용 중 시설, 구역, 노선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래 '오모이야리 예산'이라고 칭하여 일본정부가 동 협정상 부담의무가 없는 제공시설 정비비, 노무비, 광열수도비, 훈련 이전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액수는 1997년에는 2,737억엔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화로운 미군 가족주택의 건설비도 모두 일본의 부담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미일 지위협정의 차별적인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위협정상 필요 없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미국에 대한 중속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덧붙여서, 미의회 조사보고에 의하면 95 미국 회계연도의 각국의 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이것은 반드시 '오모이야리 예산'과 일치하지는 않)은 일본 3,336억엔, 한국 205억엔, 독일 61억엔, 영국 40억엔이며 일본이 단연 돋보인다.

5. 미군기지에 관한 협의기관

가. 미일 합동위원회

미일 지위협정의 구체적 실시를 위해서 설치된 미일간의 협의기관으로 구성원은 일본국 대표는 외무성의 북미국장, 미국 대표는 제일 미군사령부 참모장이 맡기로 되어 있다. 미군에 대한 시설·구역의 제공이나 반환의 결정, 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재판권의 귀속, 사고대책, 항공기의 소음대책 등에 대한 협의를 한다. 회의는 비공개이고, 합의사항은 공표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가 복귀될 때, 열린 동 위원회에서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에 대하여 협의되었으나, 합의사항('5.15 메모'로 불리고 있다)은 오랫동안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강한 요청으로 1997년 3월에 공표되었다.

또, 1995년 9월의 소녀 폭행사건을 계기로 한 오키나와현의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범죄 피의자의 신체구속에 관하여 재검토는 거부했으나, 일정한 운용 개선을 하였다. 그 결과 미 군인에 의한 살인·강간 사건의 경우 "미국은 피의자의 기소 이전의 구금에 대하여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도 호의적 고려를 하기"로 되었다.

나. 미일 특별행동위원회(SACO)

정식명칭은 '오키나와에 있는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이고 통칭 SACO라고 불린다. 1995년 9월의 소녀 폭행사건을 계기로 하여 오키나와현 내에서 고조된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에 신설된 미일간의 협의기관이다.

이미 설치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하부 기관으로서 설치되었고,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 통합, 축소를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검토와 기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훈련, 소음, 안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성멤버는 일본측이 외무성 북미국장, 방위청 방위국장 등, 미국측이 국무차관보, 국방차관보 등이다.

동 위원회는 기지의 정리·통합·축소에 대하여 오키나와현의 요구가 전면반환을 향한 것임에 대하여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라는 전제에서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기지기능을 유지한 채 정리·축소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했다. 1996년 12월 미일 안전보장협

의위원회에 최종보고를 하여 그 역할을 종료하였다.

최종보고의 내용은 7개 시설(후텐마 비행장, 요미탄 보조비행장, 소비 통신소, 나하 항만시설 등)의 전면반환과 5개 시설(북부 훈련장, 캠프 즈케란 등)의 일부반환의 합의, 현도 104호선을 넘는 실탄 포격연습의 본토 5개 연습장에서의 이전의 결정이다. 이들 반환 합의된 11개 시설의 총 면적은 약 5,002ha이고, 재오키나와 미군 기지 전용시설 면적의 21%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종보고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시설의 반환은 오키나와현 내의 기존시설에 이전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설에 수반하여 기지기능의 실질적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또한, 이전 후보지로부터 강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민이 바라는 정리·축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후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안전보장 사무 LEVEL협회가 인계하고, 최종보고에 의한 각 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취급하는 미일간의 협의는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미일의 외교, 방위 담당 대신에 의한 위원회를 말하며, '2플러스2'라고 약칭되고 있다.

1995년 9월에 개최된 최근의 위원회에서는 미군기지의 일본인 종업원의 범위 확대 및 그 급여의 경비부담, 미군의 광열비의 부담, 일본측 요청에 의한 미군 훈련지 이동시의 경비 부담이 새롭게 협정되고, 협정기간은 1996년 4월 1일부터 5년으로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한 일본측의 부담 증가는 종래의 경비부담에 더하여 첫 해에 30수억 엔에 달한다고 한다.

동 위원회에서는 그 이외에 오키나와의 미군 병사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발 방지와 기강확립, 지위협정의 조기 운용개선이 화제로 되었다.

라.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협의회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에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측은 내각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청 장관이고, 오키나와측은 오키나와현 지사이다.

오키나와현은 1995년 11월에 개최된 첫 회의에서 요청사항으로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미일 보상의 실시, 3자 연락협의회(현지사, 오키나와 방위시설국장, 미군 조정관)의 활성화 등 5항목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측은 이 요청사항을 미일 특별행동위원회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96년 12월의 최종보고로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에 관한 협의기관으로서 그밖에 후텐마 비행장 반환 관련 제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위원회가 1996년 5월에 설치되었다.

6. 미군기지와 현민의식

가. 기지에 대한 현민의식

(1) 여론조사에 나타난 현민의식

오키나와현은 각종 행정시책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79년 이래 대체로 5년마다 '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5년 1월 10일부터 2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된 동 조사에서 "미군기지에 대하여 현, 또는 나라에 특히 주력을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3의 선택항목으로부터 고르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7위 이하는 생략).

1위 미군기지를 반환시킨다 43.3%

- 2위 미군의 연습을 없앤다 15.6%
- 3위 미군인의 범죄나 사고를 없앤다 10.9%
- 4위 미군기의 소음을 없앤다 9.6%
- 5위 반환 군용지의 조기 이용 4.4%
- 6위 기지 종업원 고용의 안정 2.9%

또한 동 조사는 선택항목 안에서 순서를 정해서 3개를 고르게 하였는데, '기지를 반환시킨다'를 첫번째로 꼽는 비율이 높아서 많은 현민이 원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반환 군용지의 조기 이용'은 둘째, 셋째에 선택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2차적 요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방송협회(NHK)가 현민의 미군기지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복귀 직전의 1972년 4월부터 1995년 5월 사이에 10번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지는 불필요'가 '기지는 필요'를 일관해서 웃돌고 있다. 덧붙여서 복귀 직전의 1972년 4월의 조사에서는 '기지는 불필요'가 51%, '기지는 필요'는 35%, 95년 5월의 조사에서는 '기지는 불필요'가 44%, '기지는 필요'는 36%였다.

위 조사를 포함해서 그간 행해진 각종 여론조사는 오키나와 현민이 미군의 기지 건설과 함께 시작된 전후의 역사나 복귀하여도 '본토처럼'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기지 중압의 역사 속에서 눈앞의 광대한 미군기지를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10. 21. 현민 총 쫓기대회

1995년 9월에 발생한 미군병사 3명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은 그 사건의 흉악성으로 인하여 현민의 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 더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병구속에 대하여 미군관계자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미일 지위협정의 불평등성을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되었다. 동년 10월 21일에 개최된 <오키나와 현민 총 쫓기대회>

는 복귀 후 최대규모의 집회가 되고, 85,000명이 참가하였다. 미야코지마 및 이시가키지마의 낙도에서도 각각 3,000명 규모의 항의집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미 군인의 기강확립, 미 군인·군속 들에 의한 범죄의 근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완전한 보상, 미일 지위협정의 조속한 재검토, 기지의 정리·축소 촉진 등 4항목이 대회결의로 채택되고 이것이 현민 일치의 요구임이 확인되었다.

동 대회에 집결한 현민의 분노는 전후 50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군기지의 중압 하에 놓여 회생을 강요당한 오키나와 현민의 누적된 분노의 분출이고 집약된 것이었다. 다시 한번 미군기지의 존재 그 자체가 현민들로부터 심하게 추궁당한 것이다.

나. 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민투표

(1) 현민투표

오키나와현은 1996년 6월에 오키나와 현의회에 의해서 제정된 <미일 지위협정의 재검토 및 기지의 정리·축소에 관한 현민투표조례>(이하 현민투표조례라고 함)에 기초하여 동년 9월 8일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현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동 조례는 그 목적을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본 현에 있는 미군기지가 현민 생활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현민이 헌법상의 권리를 향수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현상 및 미일 지위협정의 내용과 운용이 현민의 생명·재산의 안전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미일 지위협정의 재검토 및 기지의 정리·축소에 대한 현민의 찬부를 묻는 방법으로 현민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따라서 현에 있어서 이들 현상의 개선에 노력하는 데 자료로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현민투표는 정부여당, 자유민주당 당 본부 등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압력, 이것에 영향을 받은 오키나와현 의회의 최대 세력인 자유민주당 오키나와현 연합회가 투표 직전에 현민에 대하여 투표 거부를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투표율은 59.53%(유권자수 909,832명 중 투표자 수는 541,638명이었다)이었고, 미일 지위협정의 재검토 및 기지의 정리·축소에 찬성은 482,538표, 반대는 46,232표였다. 즉, 찬성표는 총 투표수의 89.09%(유효투표의 92.21%)이며, 유권자 총수의 53.04%였다. 이렇게 오키나와 현민의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미일 지위협정의 재검토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직접 표명하였다.

이 현민투표의 결과는 현민 투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키나와 현지사로부터 동년 9월 10일에 내각 총리대신에게, 다음날인 11일에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에 대하여 각각 문서로 통지되었다.

(2) 나고 시민투표

미일 양 정부는 SACO의 보고에 의하여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설치조건부 반환을 합의하였으나, 그 이전 후보지로서 일본정부는 1997년 11월에 오키나와도 북부지역인 나고시 헤노코의 캠프 슈와브 난해에 해상 헬리콥터 포트기지의 건설계획을 공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현과 나고시에 이 해상기지의 신설을 수락케 하기 위하여 각종의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에 무라로카 관방장관(당시)이 제시한 오키나와의 북부진흥책에서는 '기지를 받아들일 경우'의 진흥책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경제진흥책은 노골적인 '기지확보'의 수단으로 명확히 내세워졌다.

해상 헬리콥터 포트기지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본거지 나고시에서는 건설의 시비를 둘러싸고

시민의 의견이 2분되었다. 오키나와는 반세기를 넘는 미군기지의 존재로 기지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져왔다. 나고 시민의 해상기지를 둘러싼 찬부의 대립도 이 구조에 유래한 것이다.

유권자의 해상기지 건설의 찬부를 묻는 시민투표조례 제정요구에 대하여 기지 용인파인 나고 시장은 '찬성·반대'의 양자택일을 '환경대책이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찬성·기대할 수 없으니 반대'라는 조건부 찬성과 조건부 반대의 선택사항을 가한 4자택일로 하는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안하여 동 조례는 가결되었다.

일본정부는 12월 21일의 투표를 목표로 방위청 장관이 오키나와 주둔의 자위대원 5,500명에게 협력 요청의 문서를 보내고, 방위시설청 직원 300명이 유권자 집을 연일 호별 방문하는 등의 굉장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체면불구하고 개입을 하였다.

그러나 시민투표의 결과는 투표율 82%, '조건부 찬성' 37%에 대하여, '반대' 5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오키나와의 마음'이 나고시민에 의하여 표명되었다.

이 시민투표의 결과를 보고 1998년 2월에 오토 오키나와 현지사(당시)는 해상기지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1998년 11월의 지사선거에서 당선된 이나미네 현지사도 해상기지 건설 거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7. 미군기지를 둘러싼 소송

가. 공용지법 위헌소송

오키나와 반환협정의 발효로,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시정권은 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일본국에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서, 오키나와에도 일미안보조약법 체제가 적용되게 되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거의 그대로 미군의 사용 계속이 인정되었다.

일미 안보조약 6조 및 일미 지위협정 2조에 의하면, 미군용지는 일본정부로부터 미국에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정부가 미군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원을 취득해야만 된다. 토지소유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수용 또는 강제사용의 방법으로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미군용지 특조법이다.

그러나, 오키나와가 복귀될 때 오키나와의 미군용지는 오키나와전에 의해 토지 등기부나 지적도의 소실, 형상의 변용 등으로 그 지적이 불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적의 특정을 전제로 지정된 미군용지 특조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땅값을 일거에 6배로 인상시켜서 군용지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힘쓰는 동시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지주의 미군용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공용지법(오키나와에서의 공용지 등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약 26,000명으로 일컬어지는 군용지주의 대부분은 계약 체결에 응했으나, 약 3,000명의 지주는 오키나와전의 체험을 교훈으로 "자기 소유지를 전쟁목적에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신념 하에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이 지주들은 반전지주라고 불린다). 이 계약거부 지주의 토지에 대하여, 공용지법이 적용되어, 강제사용이 행해진 것이다.

공용지법에 의하면, 사용기간은 5년을 한도로, 적용대상은 오키나와 반환협정 발효의 날에 오키나와 미군용으로 제공된 토지 또는 공작물(기지)이며, 미군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토지 또는 공작물, 자위대가 미군으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공작물 등이다. 그 '수용절차'는 방위시설청 장관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구역·공작물, 사용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것을 미리 '고시'하면, 오키나와 반환협정 발효의 날

에 '사용권'이 발생하여, 그 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용방법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이 공용지법에 의한 강제사용에 대하여, 1978년 3월, 8명의 반전지주가 공용지법은 위헌이며 그것에 따른 강제사용은 무효라고 하여, 자기소유의 미군용지 및 자위대용지의 명도를 요구하여 제소한 것이 공용지법 위헌소송이다.

동 소송에서, 미군 또는 자위대에 대한 토지제공이라는 군사목적에 위해서 제정된 공용지법은, 헌법 전문·9조의 비무장 평화주의 및 29조 3항의 사유재산은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재산권 제약의 법리에 위반하느냐 아니냐, 방위시설청 장관의 1편의 '고시'만으로 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수용절차는, 헌법 31조의 적정절차의 보장에 위반하느냐 아니냐가 논점으로 되었다. 게다가 동 소송의 계속(繫屬)중에 위반하느냐 여부가 결정되었다. 1977년 5월 14일의 경과에 의해 5년간의 사용기간이 만료하자, 일본정부는 동년 5월 18일에 지적 명확화법을 제정하여, 그 부칙으로 잠정사용권을 부활시킴으로써 그 사용기간을 거듭해서 5년간 연장하였던바, 그 효력이 새로운 쟁점으로 가해졌다.

그러나, 동 소송은 소송 계속중인 1982년 5월 14일에 연장된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공용지법이 실효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결여하는 것으로 취하되어 종료하였다.

나.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한 강제사용 취소소송

공용지법의 실효에 따라, 미군용지 특조법이 발동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미군용지에 대한 지적명확화 작업이 종료한 것을 전제로 하여, 1982년 5월 15일 이후의 계약거부 지주들의 소유지를 계속해서 미군용지를 위해 강제 사용하는 것이다.

동 법에 기초하는 강제사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로는 사업인정부터 사용재결에로 나아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략은 아래와 같다. 방위시설국장의 내각 총리대신에 대한 사용인정 신청, 내각 총리대신의 사용인정, 방위시설국장의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방위시설국장의 현 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사용 재결신청(토지·물건조서의 첨부가 의무임), 현 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사용기간과 보상금액의 결정), 사용재결에 기초한 보상금의 지불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가 사용권원을 취득한다.

여태까지, 동 법에 기초한 강제사용은 가데나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을 포함하는 오키나와현내의 주요시설(기지)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4번 행해졌다.

(1) 82년: 사용재결 시설 수 13, 토지소유자 150명, 사용기간 원칙 5년

또한 사용기간이 3년이었던 마키미나토 주택지구는 그 후 기간 만료로 지주에게 반환되었다.

(2) 87년: 사용재결 시설 수 11, 토지소유자 2,067명, 사용기간 원칙 10년

또한 토지소유자가 1982년 사용재결시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이른바 '한 평' 반전지주의 등장에 의한 것이다.

(3) 92년: 사용재결 시설 수 13, 토지소유자 585명, 사용기간 원칙 5년

이 강제사용 대상시설은 복귀시에 임대차계약에 응한 지주가, 20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거부로 반전하였기 때문에 강제사용당한 것이 중심이다.

(4) 98년: 사용재결 시설 수 13, 토지소유자 2,993명, 사용기간 원칙 5년

또한 이 사용재결 절차 중에, 종전의 사용기간 만료일인 1997년 5월 14일이 경과했으나, 미

군용지 특조법이 1997년 4월에 개정되어 그 개정법에 기초하여 1997년 5월 15일부터 사용재결이 이루어진 1998년 5월 19일까지는 잠정사용이 행해졌다. 또 가데나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 캠프 시일즈 내의 지적불명지 13필에 대해서는 지적불명을 이유로 각하의 재결이 나왔다.

상기 필지의 각 강제사용에 대하여, 반전 지주들이 내각 총리대신이 행한 사용인정 처분 및 현 수용위원회가 행한 사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한 것이,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한 강제사용 취소소송이다.

동 소송에서는 미군용지 특조법의 상위법인 일미안보조약 및 일미지위협정의 위헌성(헌법전문, 9조의 평화주의 및 29조 3항의 재산권 제한법리의 각 위반), 미군용지 특조법 자체의 위헌성(헌법 전문, 29조, 29조 3항의 재산권 제한법리의 각 위반에 더하여, 31조의 적정한 절차의 보장위반)을 다루고 있는 이외에, 반전지주의 토지에 대한 강제사용에 대하여 미군용지 특조법 3조에서 말하는 사용 인정요건(미군에게 토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그 제공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다)의 존부 및 사용재결 절차의 하자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동 소송은 각 강제사용이 행해질 때마다 제소되고 있는데, 그 소송 계속중에 사용기간이 만료하여, 그 후는 새로운 사용재결에 의한 강제사용이 행해지기 때문에 종전의 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여하는 것으로 취하되고 있으며,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소송계속중인 것은 1998년의 사용재결에 관한 것이다.

다. 오키나와현 지사 직무집행명령소송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한 강제사용절차에 있어서, 도도부현 지사는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관계되는 지주, 다음으로 관계 시정촌장이 모두 다 토지·물건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들을 대신하여 도도부현의 직원 속에서 입회인을 지명하여 서명 날인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하 방위시설국장은 1997년 5월 14일에 강제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곳(가데나 비행장 내의 토지를 포함 250필)과 1996년 3월 31일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곳(소베 통신소 내의 토지 1필)에 대하여, 1995년 3월부터 강제사용절차를 개시하여, 동년 5월 9일에는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사용인정을 얻었다.

그 후, 나하 방위시설국장은 토지·물건조서 작성에 즈음하여 지주로부터 서명날인을 거부당한 용지에 대하여 관계 시정촌장에게 서명 등 대행을 요청했으나 요미탄 촌장·오키나와 사장·나하시장이 이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오타 오키나와현 지사(당시)에게 서명 등 대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오타 지사는 서명 등 대행에 응하는 것은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기능강화·고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 10월 2일 이것을 거부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은 서명 등 대행사무는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여, 지방자치법 151조의 2,3항에 기초하여 오오타 오키나와현 지사를 피고로 하여, 서명 등 대행사무의 집행을 명하는 재판을 요구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이것이 직무집행명령소송이다. 이 사건은 나라가 지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첫 사례로서 전국의 주목을 끌었다.

동 소송의 중심쟁점은 지방자치법 151조의 2의 직무집행명령제도의 '공익'과 관련하여 나라 측이 안보조약을, 오키나와현측이 일본국 헌법을 각각 들고 정면으로 대립, 게다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소송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 소송에 기대하는 오키나와현 지사 및 현민의 절실한 희망이나 최대의 관심사는 현민의 평화적 생존권·재산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

는 미군기지가 초래하는 위헌상태를 고발하고 기지의 정리, 축소, 철거를 요구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헌법론적으로는 강제사용의 근거법인 특조법의 법령위헌성, 적용위헌성 및 서명 등 대행사무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위반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1심의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지사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한 패소판결을 언도하였다. 불복한 지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96년 8월 28일 "미군기지에 토지의 제공을 정한 미군용지 특조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며, 오키나와현에 대한 특조법의 적용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키나와현 지사의 서명대행의 거부는 현저하게 공익을 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오키나와현 지사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라. 「개정 미군용지 특조법」 위헌소송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해서 행해진 1987년의 사용재결 및 1992년의 사용재결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만료일이 1997년 5월 14일로 되고 있던 가데나 비행장 등의 12개 시설, 및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1996년 3월 31일에 만료되는 소베통신소 내의 지바나 쇼이치(知花 昌一)씨의 소유지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하여 1995년 5월에 내각 총리대신의 사용인정을 얻어서 1996년 3월 29일에 현 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의 신청을 하였다.

소베 통신소 내의 용지는 1996년 4월 1일까지 사용재결에 의한 사용권원의 취득을 못하고, 동일 이후의 사용권원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주의 반환요구를 무시하여 불법 점거상태를 계속하였다.

정부의 사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절차의 일

환으로서 현 수용위원회에 의한 공개심리가 1997년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진척상황에 비추어 대상으로 되는 12개 시설의 기간 만료일인 1997년 5월 14일까지 사용재결이 행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소베통신소 내의 용지에 이어서, 오키나와현 내의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용지의 불법 점거상태가 출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법 점거상태를 사전에 회피하여 아울러 이미 불법 점거상태로 되어있는 소베통신소 내의 용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잠정사용권이란 것을 창설한 미군용지 특조법의 개정을 생각해내어 동년 4월의 국회에서 개정법을 제정·공포하여 동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법은 방위시설국장은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이고 사용인정이 있었던 것에 관하여 사용기간의 말일 이전에 재결신청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권리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계속해서 잠정 사용할 수 있다. 재결의 신청에 대하여 수용위원회의 각하의 재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복신청 기간중(재결에 대하여 방위시설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결재가 있던 날까지) 잠정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개심리의 계속중에 대상인 12개 시설에 대한 종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고, 이들의 시설용지와 소베통신소 용지는 개정법에 기초한 잠정 사용이 행해졌다.

오키나와현 수용위원회는 대상의 13개 시설 전부에 대하여 98년 5월 19일에 사용재결을 하였으나, 그 중 가데나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 및 캠프 시일즈 내의 13필의 지적불명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토지의 구역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나하 방위시설국장은 이것에 불복하여 6월 17일 토지수용법 130조 2항에 기초하여 건설대신

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불복신청을 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각하재결이 있는 지적불명지가 잠정 사용권에 의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이 잠정 사용권에 의한 지적불명지의 강제사용에 대하여 1998년 10월 그 소유자들 7명이 개정법의 위헌무효를 주장하여 불법점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개정 미군용지 특조법 위헌소송'이다.

동 소송에서 원고들은 개정법은 헌법 29조의 재산권 보장, 사전의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보장한 31조의 적정절차의 보장에 각 위반하는 것, 원고들의 소유지에 대하여 불법 점거를 회피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개정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진 법규범의 정립인 헌법 41조의 입법개념을 일탈하는 것이며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못 가졌다, 동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생기는 잠정 사용권은 법의 소급적 적용에 다름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동 개정법에 대해서는 "승부에 질 뻔했던 나라가 그 도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꿨다" 등의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원고의 한 사람은 "미군이 총칼과 불도저로 빼앗던 땅을 일본정부는 법률의 불도저로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다.

동 소송은 1999년 2월 2일에 제1회 공판이 막 열린 참이다.

또한 동 소송에 앞서서 소비통신소 용지에 대해서도 동종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 소송은 병행해서 심리되도록 되었다.

마. 반전지주 중과세(重課稅) 취소소송

미군용지 특조법에 의한 사용권원은 손실보상금의 일괄지불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금액은 사용 인정시의 근방 유지(類地)의 땅값 등을 참고로 산출되며, 사용기간에 대응하는 중간이자

가 공제된다. 따라서 계약지주에 지불되는 땅값이 해마다 수 %씩 상승하는 것에 비교하면 땅값과 손실보상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게다가 과세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 점이 문제된 것이 반전지주 중과세취소소송이다.

아하곤 쇼코·기요(阿波根 昌鴻·善代) 부부는 이에지마 보조비행장 내에 약 16ha의 토지를 가진 반전지주로, 자신들의 땅을 일본정부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미군용지로 제공하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오키나와현 수용위원회가 아하곤 부부의 소유지에 대하여 미군용지 특조법에 기초하여 행한 1987년의 사용재결은 사용기간을 동년 5월 15일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아하곤 부부는 그간의 손실보상금으로 동년 3월에 금 1억 1,700만엔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은 일괄지불된 이 보상금 전액을 1987년도의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약 3,400만엔을 과세하였다. 아하곤 부부는 "나라와의 계약으로 1년마다 지대를 얻어서 과세되는 계약지주보다 세액이 약 2,200만엔 많아져서 불공평하다"며 세무서장에 대하여 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의 통지처분을 받았기에 그 취소를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동 소송에서는 보상금의 법적 성질과 과세시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원고인 아하곤 부부는 보상금은 10년 동안의 토지 사용이란 의무(役務)에 대한 대가이며, 임대료의 전도금이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보상금은 토지의 사용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함에 의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시에 지불된 것이고 토지의 사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차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94년 12월 14일에 선고된 1심 판결은, 강제 사용된 원고들의 소유지와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계약지주의 토지는 "미군의 이용형태에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사

실인식을 놓고, 보상금은 토지사용의 대가이며, "원고들의 의무 제공을 기다려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며,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생하여가는 것이며, 또 그 시점에서 권리가 확정해 간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1987년도의 소득은 "실제로 사용된 동년 5월 15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며, "1998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 사용이란 의무의 제공의 대가의 전도금이라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2심 판결(1996년 10월 31일 언도)은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역전패소의 판단을 하였다. 동 판결은 나라는 보상금을 지불하므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자는 그 보상금의 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는 나라의 사용권 행사를 승인하는 의무를 질 뿐이고 의무의 제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권리의 특질로부터 보면 보상금은 나라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이며, 사용재결에 의한 사용권 취득 시기에 "보상금과 관련되는 취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또 계약지주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계약지주의 그것하고 같은 정도로 하지 아니하면 정의(正義)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특별한 사정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하곤 부부의 상고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1998년 11월 10일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그 지불을 받은 해의 수입으로 산입해야 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가데나 폭음소송

이 소송은 가데나 비행장(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미군기의 '폭음'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동 비행장의 주변주민 907명(원고)이 미군기의

이착륙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일미안보 조약 및 일미지위협정에 기초하여 동 비행장을 미국 군대에게 제공하고 일본국(피고)을 소송한 것이다. 1982년 2월 26일의 제소로부터 12년 후인 1994년 2월 24일에 나하 지방재판소 판결(1심), 거기에 4년이 지난 1998년 5월 22일의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 판결(확정)을 얻을 때까지 16년이 걸렸다.

미군은 제2차 대전종료와 함께, 가데나 비행장의 전신인 구 일본육군의 비행장을 점령, 약 40배 규모의 비행장으로 확장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오키나와시, 가데나초, 자탄초에 걸치는 가데나 비행장은 3,700m의 활주로를 2개 가지는 총면적 1995만 3000m², 극동 최대, 가장 활발한 미 공군기지(제5공군 지휘부의 제18항공단의 홈 베이스)로, 방공·반격·공수·지원·정찰·기체 정비 등의 종합적 기지이다. 또 공군을 중심으로 해군 및 해병대의 출격, 보급 중계기지로서도 공동 사용한다고 하는 전략적 가치가 극히 높은 미군기지라고 불리고 있다.

가데나 비행장과 인접해서 거주하는 원고 주민은 일본국(피고)에 대하여 인격권·환경권·평화적 생존권에 기초한 야간비행 금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이착륙이나 엔진 작동의 금지 청구 및 낮의 소음 금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원고에게 65phon을 넘는 모든 비행기 소음도달의 금지 청구: 지위협정 실시에 따른 민사 특별법, 국가배상법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청구: 1972년 5월 15일(일본에 복귀한 날)부터 소장 도달일까지의 과거의 손해에 대하여 1인당 위자료 100만엔 및 장래의 손해로 한 달에 3만엔 등의 청구를 요구하였다.

일본국은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론, 정치문제론, 민사소송에 의함은 부적법 등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가데나 비행장의 공공성, 피해의 개별적 입증의 불충분 또는 이

른바 위협에로의 접근법리의 적용을, 장래의 손해배상분에 대해서는 장래의 급부의 소로서의 적격성이 결여 등의 주장하였다.

1심 판결(『판례시보』 1488호 20쪽 기타)은 금지청구에 대하여 소의 적법성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일본국)의 지배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미국)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가 실당이라고 하여 청구 기각, 과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특별법을 적용하여 원고 주민의 청각 기타의 신체적 피해에 관해서는 개별적 입증에 불충분하므로 그 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생활방해나 수면방해 등에 기인하는 불쾌감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역지정에서의 W치(국제민간항공기 ICAO가 정하는 다수의 항공기에 의한 장기연속소음폭로의 척도) 80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고, 도는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에 대하여 그 피해가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하여 청구의 일부를 인정하였다. 또 위협에로의 접근법리를 채용해서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의 날 이후에 전입한 원고 주민에 대하여 위자료의 15%를 감액하였다. 원고, 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피고(일본국)는 가집행에 걸리는 금원의 반환도 요구하였다. 제2심 판결(판례 타임즈 987권 87쪽 기타)은 금지청구에 대하여 원판결(1심)을 유지하고, 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 최종 구두변론 종결 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것을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에 대하여 원판결과 마찬가지로 민사특별법에 의거했으나, 원고 주민이 입은 피해의 구체범위를 확대하였다. 특정지역(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제1종 주거전용지역 및 제2종 주거전용지역 등, 주로 주거로 사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W치를 75 이상이라고 판시한 것, “오키나와 본도의 주택사정, 고용정세, 교통사정을 고려하면, 본도 전체를 보아도

주거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본건 비행장 주변의 중부지역에 있어서는 본건 항공기소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선택할 여지가 적다는 특수사정이 인정된다”는 등 원판결이 채용한 위협에로의 접근법리를 부정한 것 등. 또한 청각 기타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각 피해 발생의 위협에 대해서는 불안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심한 소음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추인되는 하나의 사정으로서 참작해야 할 것이다” 등으로 판시한 것도 주목된다.

가데나 폭음소송에 있어서도,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미군기의 이착륙금지청구 등을 기각한 아쓰기(厚木) 기지 소음소송 판결(最判 1993년 2월 25일)이나 요코타 기지 소음소송 판결(最判 1993년 2월 25일) 등의 벽을 타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위협에로의 접근법리를 부정하는 등 폭음피해의 구체범위를 한 발자국 전진시켰다.

사. 패스 몰수 소송

복귀 후, 약 12년이 지난 1984년 2월 23일, 미국 해병대 기지 캠프 휘스터(복귀에 즈음하여 캠프 즈케란과 캠프 휘스터가 통합되어서 ‘캠프 즈케란’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렇게 불린다) 안에서 일어난 패스 몰수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미 해병대 수사부(CID)는 매상금의 착복·횡령의 용의로 OWAX(미 육군 및 공군 태평양지구 익스체인지 서비스의 오키나와지구 익스체인지) 담당관과 OWAX과 기지 내에서 이용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한회사 뷰칼·바버·컴퍼니(기지 내 특면업자)임원들과 함께, 캠프 휘스터 내의 동 유한회사의 즈케란 영업소(이발소)에 들어와서, 가게 안을 수사하고 동 이발소에서 일하는 이용사 5명의 통행허가증(패스)을 몰

수하였다. 그 이발사 5명은 패스가 반환되지 않는 채, 회사측으로부터 동년 8월 16일 예고해고를 받아서 해고되었다는 사건이다. 패스의 몰수는 패스 없이는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해고 예고 없이), 문답무용으로 해고당한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일본인 종업원의 패스 몰수문제’로 집중심의를 하는 등, 기지 내 특면업자 아래에서 일하는 (당시, 오키나와현 내에 3천명이었다고도 한다) 제4종 고용원이란 기지 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일반적으로 미군기지 내에 일하는 종업원(미군 고용인)은 4분류되고 있다. 제1종: 일본국이 직접 고용하여 미군이 사용하는 노동자, 급여는 일본국이 지불한다. 제2종: OWAX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제3종: 하우스메이드적인 노동자(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 관련되는 제4종: OWAX와 계약한 업체(기지내 특면업자)에 고용되어서 기지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제1종이나 제2종의 노동자라면, 기본 노무계약이나 제 기관 노무협약에 의하여 노동자의 신분보장과 미군의 시설관리권과의 조정이 어느 정도 행해지며, 노동자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상세하게 정해지고 있으므로 갑자기 패스를 몰수당하는 일은 없다. 이것에 비하여 제4종 노동자에 대하여는 미군과의 관계에서 신분보장제도가 법적으로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답무용적인 패스 몰수 사건을 발생시킨 본질적 요인이다. 게다가 미군하고 특면업자와의 계약내용에 “업자는 미군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인물의 사용을 그만둘 것”이란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하여 미군은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의 권리를 독차지하고 있으며, 바로 제4종 노동자는 식민지적 상태에 놓여 있다.

그 해고된 고용원 중 2명(全 오키나와 이용미

용노동조합 조합원)이 유한회사 뷰칼·바버·컴퍼니와 일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서 제소한 것이 이 패스 몰수 소송이다. 모든 청구가 최고재판소까지 다투었으나 기각되었다(나하지판 1990년 1월 30일, 후쿠오카고재나하지판 1992년 3월 12일, 최판 1993년 11월 2일, 어느 것도 판례집 미등재). 제1심 판결은 원고들에게는 “매상금 착복의 혐의가 충분히 있다”, “패스 발행에 대해서는 기지 사령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또는 “엄격한 질서의 유지와 규율의 보지가 요청된다”는 등, 패스 몰수와 불반환에 대하여 위법성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또, 원고의 제기관 노무협약을 원고에도 적용해야 될 것, 또는 부당 노동행위였다는 것 등의 주장 중 어느 것도 인용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제 기관 노무협약의 원고에로의 적용(준용 내지 유추적용)의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일본국에 고용된 종업원이며, 원고는 일본국이 아닌 피고 유한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기지 내에서 취로하는 일본인으로서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도,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는 제 기관 노무협정의 종업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등의 이론으로 원판결을 답습하였다. 어쨌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는 기지 노동자(제4종 고용원)의 권리 옹호를 위하여 다툰 본건 소송의 의의는 크다. 원고측의 일관된 주장: 고용형태의 형식적인 차이를 넘어서, 적어도 “고용의 실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용의 실태가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제 기관 노무협약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상고 이유)라는 주장 실현을 위하여, 설득력 있는 법적 구성의 구축이 기대된다.

아. 시로마(城間) 소송

1982년 3월 8일 오전 7시 넘어, 긴초(金武町:

오끼나와 본도)에 있는 묘지 안에서 시로마 고에이씨(城間 幸榮, 당시 48세)가 해병대원 케빈 M 헤데미크(캠프 한센 기지에 주류하는 제3해병사단 소속, 당시 20세)에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두부를 구타당하여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헤데미크는 17살에 해병대에 입대, 1980년 9월에 오끼나와에 배속되었다. 그 다음해의 3월부터 4월, “불법침입 및 절도의 공모, 명령 불복종, 불법음주, 보초근무중의 수면 및 외출금지명령 위반의 통일군법 위반죄를 범하고”, 군법회의의 1심에서 동년 6월, “벌금, 이등병으로의 강등 처분, 징역 2개월 및 불행적에 의한 제대처분의 판결을 받아”, 징역과 벌금형은 형의 집행에 복종하였다. 제대처분에 대해서는 항소. 그 항소중 전술의 살해사건이 발생한 1982년 1월에도 “명령 불복종, 폭행, 모욕, 음주에 의한 풍기 문란으로”, 군법회의에서 다시 이등병으로의 강등처분 및 금고 29일의 판결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살인사건의 전달인 2월에는 “귀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자기의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문제로 고민한 끝에, 음주하여 면도칼로 자기의 왼쪽 손목을 몇 번 베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헤데미크는 “사건 당일의 오전 4시쯤, 스텝에서 음주중, 상대고객인 고에이를 알게 되었다.”

살해된 시로마 씨의 유족(처와 아이 5명)은 동년 6월 26일, 일미지위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에 기초하여, 헤데미크와 일본국에 대하여 시로마씨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재판 도중에서, 피고 헤데미크에 대한 재판이 분리되어서, 나하 지방재판소는 1983년 3월 8일, 헤데미크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4,080만엔 여의 배상을 인용하였다(확정).

그러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는 최고재판소까지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나하지판 1987년 1월 27일, 후쿠오카고재나하지판

1989년 2월 28일, 최판 1992년 9월 24일, 어느 것도 판례집 미등재). 원고의 유족측은 가해 미국병사 헤데미크가 전술한 바와 같은 상황 하에 있었으나, 헤데미크의 상사는 헤데미크가 “기지로부터 탈주할 위험이 있고, 탈주하면 무언가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리 헤데미크의 생활, 행동을 규제하여 탈주를 방지하거나, 탈주한 헤데미크를 즉시 데리고 돌아가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헤데미크를 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건 살인사건은 “헤데미크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던 상사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여, 일미지위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에 기초하여, 일본국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하지판 1987년은, 헤데미크의 행동은 “과거의 피해체험과 결부되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지, 헤데미크의 상사가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후쿠오카고재나하지판 1989년도 거의 동지).

복귀 후에도 오끼나와에서의 미국 병사에 의한 범죄나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는 다수에 달한다. 본 사건은 ‘복귀 후 오끼나와에서 제소 제1호사건’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복귀 후의 오끼나와에서, 가해 미국병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 최소의 경우이다. 피해자측이 가해 미군병사의 배후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단호한 권리주장을 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돌파구를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가해 미군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승소 판결이 얻어졌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의 이행문제가 남는다. 본건 소송은 이 의미에서도 주목되는 경우이다. 시로마 씨의 유족은 승소판결 후의 1984년 5월, 공무의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

한 <합중국군대 등의 행위에 의한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총리부령>에 기초하여, 공무의 손해배상 절차를 취했다. 그런데 절차 개시로부터 1년 후, 태평양공군 제5군 사령부로부터 시로마 씨의 유족에게 2,416만엔 여의 공무의 손해배상금(미군측은 ‘호의적 지불’이라고 칭하고 있음)의 제시와 함께, 그 지불에 의해서 본건 사건에 기인하는 가해 미군병사나 일미 양국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화해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게다가, 나하방위시설국은 “나라에 대한 재판을 취하하여라, 취하지 않는다면 합중국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족은 일본국에 대한 재판을 계속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항수단을 취하여, 1995년에는 나하지판 1983년의 인용배상액 59%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지불케 하였다.

“오끼나와현만 하더라도 해마다 1,000건 이상의 공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토를 포함하면 2,000건을 넘는 것은 아닌가 예측된다. 이만큼 대량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공무의 피해 보상절차의 존재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무의 피해자가 최소한도의 동 절차조차 밟지 아니한 채 억울하나 할 수 없이 단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원조를 받지 아니한 채 방위시설국이 시키는 대로 어둠 속에서 일방적으로 합중국의 ‘호의적 지불’을 수령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권리로서의 공무의 피해 보상제도의 실현을 전망하면서(1997년에는 ‘미군인·군속에 의한 사건 피해자의 회’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대강 안>이 준비되고 있다), “기지피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걸음을 쌓아올리는 속에서 반전 평화의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끝으로 - 일미안보조약과 헌법

가. 일미 안보조약의 헌법 적합성에 대해서는, 구 안보조약 당시부터 열 가지의 관점에서 의의(疑義)가 나와 있었으나, 맨처음에 문제로 된 것은, 헌법 9조와의 관계이다. 동조는 제1항에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등을 포기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것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군을 주류하게 하는 것이, 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에 해당하느냐 아니나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 논점에 대하여, 구 안보조약 당시의 1959년 3월 30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안보조약이 헌법 9조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의 재일 미군 다치카와(立川) 기지의 확장에 반대하여 싸우던 도쿄도 수나가화초(砂川町: 당시)의 농민을 지원하여 기지 안으로 들어간 대학생에 대하여, <안보조약 3조에 기초한 형사특별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 특별법이 위헌·무효라고 하여 무죄 판결을 언도하였다(수나가와 형특별 사건). 안보조약을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략 아래와 같다.

즉 안보조약은 “그 체결의 동기, 교섭과정, 게다가 우리 나라와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정치·경제·군사상의 밀접한 협력관계, 공통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합중국이 우리 나라의 요청에 응하여, 재일 미군을 사용하는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미군을 주류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휘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의 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보조약은 위헌이다. 이 판결은 1960년 안보 개정 반대투쟁의 전 해에 나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판결은 같은 해인 1959년 12월 16일 최고재(最高裁)에 의해서 파기된다. 최고재는 미군에 대하여 일본이 지휘권,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을 주류하게 하는 것은 전력의 보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 9조 2항 위반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래서 안보조약의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견 더없이 명백하게 위헌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범위 외의 것이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상기 조약의 체결권을 가지는 내각 및 이것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는 국회의 판단에 따르게끔 하고, 종국적으로는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정치적 비판에 맡겨야 될 것으로 해석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통치 행위론으로서, 판단을 회피한 것이다. 이 판결은 오늘까지 선례로서 유효하며, 사법심사권의 범위의 문제로서도 논의의 표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나. 안보조약에 관한 헌법문제로서 의논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자위권의 문제이다. 일미 안보조약은 전문(前文)에서 “(일미) 양국이 국제연합헌장(51조)에 정한 개별적 도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괄호 안은 필자)라고 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적인 권리로서 자위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점이지만, 무력에 의한 자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이것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학자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이 안보조약의 문언이 말하는 ‘자위권’은, 무력에 의한 자위의 권리이다. 따라서, 조약의 이 문언은 헌법에 위반할 우려가 농후하게 된다.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은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본래의 자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하고 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

을 경우에, 그 나라와 관련된 자기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은 무력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을 가할 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재일미군이 공격당한 경우, 이것이 일본에 무력공격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재일 미군에로의 공격에 대하여 자위대가 공격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논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이 한층 더 명백하게 된 것은 총론에서 언급한 일미 안보공동선언과 이것에 기초하는 1997년의 신 가이드 라인이다. 여기에서는 미군은 ‘주변사태’이면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일본의 여러 가지 협력의 의무화되어 있다. 더구나 ‘주변사태’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의 분쟁에 일본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자위대가, “자기 자신은 무력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을 가할” 행동에 가담할 것을 의미하므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바로 그 자체로 되어, 헌법 위반이 될 위험이 큰 것이다.

다. 안보조약과 관련한 헌법문제로는, 미군기지를 강제적으로 수용·사용하는 절차를 정한 미군용지 특조법이 헌법 31조의 적정절차조항에 위반한다는 문제와, 오키나와현에 기지를 집중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헌법 14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재판부는 1996년 8월 28일, 어느 것이나 합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재판소가 ‘오키나와’라는 일미 안보체제의 모순이 집약된 문제로부터 도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과 오키나와의 관계로 보면, 헌법의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는 일관되게 헌법 위반의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번째로, 헌법제정의회에 오키나와 대표는 참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헌회의를 구성하는 중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오키나와 현민의 선거권은 정지되었고, 오키나와에서의 선거는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오키나와 대표의 중의원의원은 없었다. 오키나와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식마저 부정한 속에서, 헌법은 심의·제정되었던 것이다. 헌법이 비전·비무장의 평화주의를 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는 배후에는 오키나와의 미군에 의한 군사점령과 군사기지화가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로 일본의 독립은 바로 안보체제의 발족이지만, 그것은 오키나와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에 의한 아메리카의 군사전제지배에 대한 일본의 허용이며, 반헌법적 조치이다. 평화조약 3조에 의한 아메리카에 의한 시정권(군사지배) 아래에서, 오키나와 현민의 온갖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평화가 어지러워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번째로, 1972년 5월 15일에 오키나와는 일본에 복귀하여 헌법 적용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안보체제는 변질·강화되고, 헌법의 평화주의 공동화는 한층 진척되고 있었다. 명실공히 오키나와와 본토를 포함한 일본 전체 속의 일미 안보체제의 요점으로서의 위치가 오키나와에는 부여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유지·강화는 일미정부의 공통의 목적으로 된다.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원하는 오키나와 현민의 요구는 이것하고 대립한다. 이 대항관계 속에서 헌법과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토론 보고

이 유 정

1. 개요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토론회는 1999. 3. 27. 오끼나와대학 1동 105호실에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오끼나와대학 다미나또 명예교수가 '오끼나와의 근현대사'를, 오끼나와대학 다카다 강사가 '오끼나와에서 한국·조선인의 상황'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오후에는 미군기지문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연에 앞서 한국, 일본, 오끼나와 대표의 인사말과 내빈으로 참석한 오끼나와 지사, 나하시장, 오끼나와대학 학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오전에 진행된 강의에는 한국 변호사들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오후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에는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약 40분이 초과되었다. 발제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나 편의상 토론자의 이름은 생략하였고 발언순서 역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편집하였다.

2. 인사말

가. 민변 최영도 회장

존경하는 이또 가즈오 변호사님, 긴조 지카시 변호사님,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대표단은 그저께 이곳 오끼나와에 도착하여 슈리성과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지만 고난에 찬 오끼나와 역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에 희생된 역사와 지금의 현실이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우리는 태평양전쟁의 전적지와 미군기지를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경영전략을 위하여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오끼나와의 현실과 고민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일본, 특히 오끼나와가 당면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주신 양국의 법률가 여러분, 특히 오끼나와의 법률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문을 공동 집필하신 일본의 에노모토 노부유키 외 6명의 변호사님과 한국의 노정희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들과 참석자 여러분이 질문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여 오늘의 이 심포지엄이 미군기지 문제,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한일법률가교류회는 2년마다 양국을 오가며 개최됩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관심사와 동북아

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류회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끼나와측 긴조 지카시 변호사

최영도 선생을 위시한 한국대표 여러분, 이또 가즈오 선생 이하 본토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법률가 교류 오끼나와 대회의 하일라이트인 셋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지역 실행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그 전에 일찍부터 한일법률가의 교류 추진을 위해서 진력하시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몰두해오셨던 후지모토 다다시 선생이 지난 3월 4일 타계하셨으므로 선생의 명복을 빌고 동시에 선생이 키워오신 정신을 함께 모두의 것으로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묵념을 올렸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것은 초상화 밖에 없지만 선생의 혼은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어제 필드 워크에서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오끼나와에서는 방대한 미군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층 이설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기지의 건설과 강화를 둘러싼 움직임이 급속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로서도 일본의 군대가 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참전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가 신 가이드라인 관련입법이라는 형태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남북의 민주적·자주적·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적 비원이 달성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지역에 각각의 독자적 문제를 안고 있음과 동시에 공통의 문제·과제도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배경·근본에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세계전략이라고 할까, 패권주의, 아시아 정책이 있습니다.

한일의 민주적 법률가가 이들 제 문제에 대

해서 함께 모여, 연대정신을 갖고 보고, 토론, 연구, 분석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은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고,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 그리고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평화와 인권의 확립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끼나와·일본에서의 미군기지, 신 가이드라인 등 전쟁에의 길에 대한 반대운동은 남·북·조선의 민주적,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집회의 결실 있는 성과와 그 성과를 미래로 살려나가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 나하시장 親泊 康晴 인사말(부시장 대독)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 여러분이 본 시에 맡겨서 오끼나와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끼나와와 한국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610년 정도 전에 中山王 察度가 고려왕조에 사자를 보낸 무렵부터 시작되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전쟁에 의한 슬픈 시대도 존재하고 있었고, 특히 지난 전쟁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한국에 대한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부터 우리들은 과거 전쟁의 반성에 나서서 항구평화주의를 기조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부전(不戰)의 결의를 하여온 바여서, 본 시에서도 지난 전쟁에서의 지상전의 비참한 체험을 교훈으로써 평화행정을 시정의 중심으로 해온 바입니다.

20세기는 전쟁의 희생자가 항상 끊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평화를 회구하는 세계인들에 의해 인류가 안정 속에서 비약 발전할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대변혁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시기에 양국의 법률가가 모여 평화에 대해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은 실로 시의를 얻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현은 아열대 지방에 속해서 동식물도 다채로운 색상이 특징이고, 바다도 코발트블루로 빛나는 우수한 관광지로서 문화적으로도 독자성을 띠고, 주민들도 여행객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계실 동안 나하의 거리를 충분히 즐기시도록 권합니다.

또 대회 참가자 여러분은 이미 전날 보신 대로 본 현에는 전후 54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광대한 미군기지가 소재하여 현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꼭 토론을 깊이 해주시도록 강하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대회가 대성공을 얻어서 교류의 고리가 더 한층 전아시아 지역의 교류로서 크게 발전될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원드리고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3. 주제발표(논문 참조)

한국 :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 노정희 변호사

일본 :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현상과 문제점 / 가토 히로시 변호사

4. 질의, 응답

가. 일본측 질의와 한국측 응답

문 :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도 미군기지가 있다면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들은 어떻게 부양을 받고 있으며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약 한 달 전 미군이 한국인 처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답 :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외국남성 간에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적법이 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간에 태어난 자녀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국여성과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외에 법률상 혼혈아에게 불평등한 규정은 없으나, 사회·문화적으로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최근 미군이 한국인 처와 자녀를 살해한 문제에 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위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 :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또는 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 문제를 공해문제, 범죄피해자 문제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답 :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미군철수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적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다소 우회적인 범죄피해자 문제, 공해피해 문제, 기지반환 운동 등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활동영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 대전협정과 마이어협정이 어떻게 다른가.

답 : 대전협정은 6.25전쟁 중이던 1950. 7.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주한미군 관할권에 대한 협정으로 모든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을 미국에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수많은 미군 범죄가 발생해왔다. 또 마이어협정은 1952. 5. 한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으로 경제적인 분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 미군기지로 공여한 토지의 임대료가 24억 달러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임대료를 누가 지급하고 있는가?

답 : 현재 한국에서는 미군에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여지의 임료를 한국 평균 임료로 산정하였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국방부가 추산한 수치이다. 위 수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문 :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공여지를 제공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는가?

답 :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6.25전쟁중 사용하던 토지이며, 전쟁중에는 아무런 절차나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징발법에 의해 국가가 토지를 징발하고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 미군에게 공여하여 오다가 1970년대에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위 특별법에 따라 미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징발보상증권으로 국가가 취득하고 미군에게 공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미군에게 공여되지 않았으나 미군이 훈련장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임시공여지는 평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할 수 있되 미군이 훈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적법한 보상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 :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군자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다. 한국민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는가? 또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지철폐 및 미군철수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1 : 현실에 대한 인식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반드시 전체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광주민중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후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 또 1988년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과 미군철수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는 평택 등을 중심으로 기지반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또 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미군기지 철폐운동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답2 : 미군기지 반환과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용산미군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10% 정도만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당장 또는 수 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의 국민들만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 즉 포용정책은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습우화에서 나온 용어로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현 정부는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적십자를 통해 북한에 비료를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전제는 남북간의 어떠한 무력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한 역시 북한의 무력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정책이며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한국측 질의와 일본측 응답

문 : 발제자의 입장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오키나와 주민들 입장에서 미군기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인가?

답 : 발제자의 개인적인 입장은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토론에 참석한 많은 일본의 변호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우리들은 무력에 의하지 않는 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 물론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에 의하지 않은 평화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의 주민들이 모두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 가운데는 미군이 일본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군기지 반환을 원하지 않고, 미군기지반환 주장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문 : 일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 : 분명히 미군기지를 용인하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소녀 강간사건 이후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간에 미군의 주둔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일본 국민들이 미군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 일본은 미군철수 주장을 통하여 일본 무장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도하고 있지 않는가? 미군이 철수한 후 자위대가 그곳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미군철수 주장은 미군에 의한 무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일본의 무장화와 군국주의화 역시 반대한다. 미군기지의 철수운동

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평화운동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군이 철수한 후 그곳에 자위대가 주둔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미군과 자위대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답변하기 곤란하다(웃음).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토지를 자위대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호텔 등을 짓는 경우도 있다.

다. 부총의견

사회 : 한국과 미국의 미군기지 문제는 한국에서는 미군의 존재 자체를 용인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군기지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고, 일본은 그와 달리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미군이 없으면 일본이 군국주의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시아 국가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동경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 공산당 후보 모두 동경에서의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중 당선이 예상되는 자민당의 후보는 과거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일본이 군국주의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교육, 정보교환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하며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일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다. 그 내용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자위대가 출

동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보조하거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 : 미군기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참가한 일본 변호사 여러분은 반전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며 이 분들에게 동지적인 입장에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일본에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평화헌법이 과연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평화헌법은 외부의 요구가 아닌 일본 내부의 소외된 자들을 위한 운동과 함께 이루어질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미군기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의 경험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포가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 총괄평가

한국 (고영구 변호사) :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총괄을 대신할까 한다. 어느 나라에 타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상이다. 군대의 존재는 어떤 의미로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한일 양국에서 미군의 주둔은 미국과 체결된 안보 방위조약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모순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타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둔국의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해야 하고 주둔국의 진지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 또 주둔

병력은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주둔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면 안 된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미군의 무력행사에 동원될 수 있는 반 위헌적인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도 일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평화체제로 바꾸고 과감한 군축을 통해 타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햇볕정책이 미군주둔을 전제로 한다는 어느 토론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사실 나는 대통령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을 때 깜짝 놀랐다. 단기적으로는 미군의 축소와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 미군범죄에 대한 보호운동 등으로 자주권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시아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일본 법률가들이 노력해온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법률가의 활동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민중들의 저항은 언제나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왔고 법률가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대가 필요하다. 『오끼나와 이야기』라는 책 말미에, 어느 한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그 나라 민중들의 저항에 못 이겨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 그 나라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식의 미군철수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운동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이케 변호사) : 동경에서 이번 교류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총괄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오끼나와를 비롯한 기지문제로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 분들에게 총괄을 부탁드려야 하는데도 제가 나서게 되었다. 오늘 토론에서 미군기지 문제로 한일 양국에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기지의 환경문제, 주민피해문제, 방위비 부담문제 등은 한일 공통의 문제이며, 후텐마 기지반환운동과 용산 기지반환운동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997. 일본의 열화우라늄탄이 한국으로 이전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양국의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소송 등의 방법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대하여 양국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미국의 동맹군이 되는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일동맹을 위해 일본의 민간인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신가이드라인은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란다. 신가이드라인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들은 한일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공통의 사안에 대하여 연대할 필요가 있다. 교류회 직전 돌아가신 후지모토 변호사와 사무국 임원들이 마지막 회의를 하였을 때 후지모토 변호사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일본의 여론이 시끄러울수록 한일간의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서울에서 있었던 제3회 교류회보다 이번 교류회의 논의는 매우 진전되었고 보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후지모토 변호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일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폐회 선언

강연 등 : 오끼나와를 이해하기 위하여



오끼나와의 상징 슈리성

일본 근현대사에서 오끼나와 민중의 발자취

—징병제, 오끼나와전투, 미군지배—

강연 田港朝昭(류큐대학 명예교수)

번역 김진국, 박성호, 임종인

서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田港朝昭입니다.

오늘 한일법률가교류회 오끼나와대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한국어 통역을 해주실 분은 교토 리스메이칸대학 법학부의 서 승 교수입니다. 정말로 영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서 승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오끼나와 민중이 일본 근현대사상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입니다. 일본 근현대사 약 130년의 흐름 가운데 오끼나와현은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다른 역사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을 세 가지 고른다면, 저는 '징병제', '오끼나와전투' 그리고 '미군지배'를 주저 없이 선택합니다.

아무튼 올해 1999년은 일본에게는 일본국헌법 시행 후 52년째에 해당합니다.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생겨난 일본에 있어서는 제2의 헌법으로, 보통 신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의 헌법은 110년 전인 1889년에 성립된 대일본제국헌법으로 구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헌법에서는 주권은 천황에게 있었으며, 국민은 '천황의 민' 즉 '臣民'이라고 불려져 신성불가침인 천황에 절대적 복종이 강요되었습니다. 군대의 통수권도, 입법권의 주요 부분도 천황에게 있었습니다. 천황제' 국가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구헌법은 이렇게 천황 중심이었습니다.

이 구헌법을 기초로 천황제 정부는 국민을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 이래 약 50년간 일본은 끊임없이 해외침략을 계속했습니다.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침략하여 심대한 가해행위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50년 후인 1945년, 오끼나와전에서의 패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계기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후 54년간은 침략전쟁을 반성하여 제정된 신헌법의 시대입니다. 신헌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둘째는 주권재민, 셋째는 전쟁방기 즉 평화주의입니다. 신헌법에 의해 구헌법의 주권재군 및 침략체제는 부정되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시기로 크게 전환하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에 점령된 오키나와는 대전 후에도 미군의 점령 하에 놓였습니다. 강화조약 체결에 의해 일본은 독립했습니다만, 동 조약 제3조에 의해 오키나와현은 계속하여 미군의 점령 하에 놓여졌습니다. 따라서 신헌법은 오키나와에서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군에 의한 점령기간은 전후 54년간의 반에 해당하는 27년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을 중심으로 군사기지를 대규모로 구축했습니다. 미군이 점용한 기지의 많은 부분이 민간인 땅과 자치단체의 땅(민유지와 자치체유지)입니다. 따라서 미군의 기지확보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전투 후 집을 잃고 받을 빼앗기고 거주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미군기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군사기지의 면적은 오키나와 본섬 면적의 거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그것은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미군기지 면적의 75%에 달합니다. 민중은 미국에 대항하여 생활권을 지키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

미군의 군사점령을 중지시키고, 오키나와를 일본의 시정(施政) 하에 반환시킨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부터 27년째가 되어야 겨우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던 것입니다. 인권존중, 주권재민, 평화주의의 신헌법이 발효되고 나서 25년이 되어 오키나와현민도 겨우 일본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되어도 거대한 미군기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금년은 오키나와 전투 후로부터 54년, 시정권 반환의 해로부터 계산해서 그 반인 27년이 되었습니다만, 미군기지의 넓이, 기능은 변화하였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후

54년간의 오키나와기지의 문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근대 120년간의 오키나와 민중의 역사적 성장과정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1. 징병령의 시행과 황민학교육 군사적 동원체제의 확립

일본에서 징병령이 시행된 것은 187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현에서 징병령은 청일전쟁 후가 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이 설치된 것이 다른 현과 달리 전국 징병령 시행 후인 1879년이었던 것도(징병령이) 늦은 이유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키나와현 설치 후 20년이나 지난 1898년에(징병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다른 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의 징병령의 부속문서인 <징병령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모두(冒頭)에는 늦게 된 이유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류큐왕국을 무력에 의해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중국과의 책봉체제에 근거하여온 류큐왕국 지배층에게는 일본정부에 반항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움직임을 억누르기까지 징병령을 강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에 의해 구 류큐왕국 지배층의 반일적 동향을 염려할 필요는 이미 없어져, 이제야말로 '징병령을 시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한 것입니다.

징병령 시행을 전후하여 현 당국은 학교에서 천황제 교육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의 신문에 의하면 소학교 최고학년 4년생 약 400명이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천황제 교육의 효과는 10수 개 항목의 조사항목 중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은 누구인가'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었

습니다.

'천황'이라고 대답한 어린이는 402명 중 364명, 90.5%라고 하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을 교사나 부모라고 한 어린이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래의 희망은 '군인' 혹은 '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면 농업에서 충의를 다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스러운 일본 노래'를 물으면 그 대답은 누구라도 대일본제국,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만으로 황민학교육 효과의 정도를 곧바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국가와 현 당국이 황민학교육의 실행을 학교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정도는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조.

그런데 징병령 시행 다음 해 즉 1899년 경비대사령부는 징병령에 의한 군사훈련에 적합한가 어떤가를 측정하기 위해 장년 남자의 교육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할 가까이가 '전혀 독서와 산술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소학교 교육의 성과'는 소학교 졸업 후 수년이 되어서 '삭감'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현 당국은 사태를 문제시하여 징병령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병준비교육의 실시가 당연한 과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당국은 또 군인필독 필수휴대 준수문헌이었던 '군인에게 하사하신 칙어'부터 기본적 학력 즉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를 교육과정으로 한 징병준비교육의 실시를 각촌에 요구하였습니다.

교원단체도 또 '소학교 教育簡関点呼法'을 중요과제로서 내걸었습니다. '소학교 教育簡関点呼法'이라고 하는 것은 징병검사의 합격율 목표로서 하여 청년을 매년 1회 학교에 모아서, '勸語奉讀, 内地語 및 己習學科의 練習' 등에 노력하도

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징병령 실시를 계기로 하여 현시정촌과 학교도 징병준비교육을 통하여 청년의 군사적 점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력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청년회를 군사보완적인 청년단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된 것입니다.

러일전쟁기에는 오키나와현에서도 애국부인회지부 등 국책보완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전쟁에 즈음하여서 '군인 후원'활동을 하는 부인단체는 현군시정촌, 나아가 부락까지도 활동단위로 하여 결성되었습니다.

러일전쟁 직후에는 '일러전쟁 기념록'을 편찬한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에 협력한 적십자사, 애국부인회, 군인우대회 등의 '임의가맹'단체, 현제도의 하부조직으로 되었던 군장(郡長) 및 촌장(村長), 군사학(軍視學), 학교 그리고 부락의 유력자의 활동의 기록이 그 임무였습니다.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을 '후세자손에 전하여 충애의 정신을 발휘시켜, 이로써 국민사상 계발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은 징병 적령자로 하여금 병역을 준수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각 지방에 '징병의무시행규정'을 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정촌장은 순사와 함께 매년 9월 징병검사에 앞서서 '만 1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남자를 소집하여 신체검사'를 하였습니다. 신체에 스스로 손상을 가해서 징병기피를 기도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만약 나온 경우에도 그 '범행'을 알 수 있도록 시정촌장, 순사에게 예방조사를 의무화하였던 것입니다. 순사에게는 검사의무가, 촌정장에게는 그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제국제향군인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제향군인회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전시동원체제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 훈련을 강화하고 더불어 민중에게 군사적 계몽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과제였습니다. 정촌 단위에 조직된 재

향군인회 분회는 군현과 조직단위를 넓히고 중앙의 통제 하에서 군사선전기관, 대 민중 군사적 장악기관으로서 강화된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오끼나와현의 천황제 군사체제는 청일·러일전쟁을 계기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매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의 '좋은 성적'을 목표로 부락·학교 등의 일상적 단위 가운데 민중을 훈련하고 반관반민의 다양한 단체를 매체로 하여 현군촌의 기관을 통하여 결국 국가가 민중을 장악한다고 하는 체제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쳐 오끼나와전에서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2. 오끼나와전투 하의 민중

가. 전장(戰場)의 민중

나하의 서남부 약 400km의 해역에 하테루마섬(波照間島)이 있습니다.

그 하테루마 섬의 학교에는 일본군에서 파견된 '離島殘置공작원'이 있었습니다. 공작원은 오끼나와 전투 중간에 섬주민들을 군도로 위협하여 모든 가족을 몰수하고, 게다가 섬주민 전원에게 말라리아가 창궐한 이리오모테 섬(西表島)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강제이주와 식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섬주민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화가 난 섬의 교장은 온 몸으로 공작원에게 저항하여, 마침내 하테루마 섬의 주민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의 3분의 1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하테루마 섬 소학교의 어린이들도 66명이 죽었습니다.

지상전을 면한 하테루마 섬과 같은 지역에도 전쟁의 피해가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일본군의 식량 강탈과 강제이주에 있었고,

피해의 증대를 여하튼 줄인 것은 온몸으로 저항한 교장이었습니다. 오끼나와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권력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전쟁체험

宮城喜久子が 쓴 『해바라기 소녀 16세의 전장』이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미군의 오끼나와섬 상륙작전 직전에 야전병원에 동원된 16세의 여학생의 생생한 전장기록입니다.

채굴작업, 수물, 식료조달로부터 약품운반, 부상자 봉대 교환, 배설물의 처리 등이 여학생의 임무였습니다. 포연과 빗발치는 총탄 하에서 천황, 대일본제국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일을 계속하였지만, 병원 해산 및 전화(戰火)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옥쇄' 직전에 미군의 충격에 맞고 많은 학우가 목숨을 잃었지만, (저자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여자학도대 426명 가운데 190명은 죽었습니다.

생존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전쟁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평화활동을 하고자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결의 실행하기까지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군국주에 대한 공포, 평화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평화자료관의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지금은 전쟁체험의 증언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安里要江이 쓴 『오끼나와전투, 어떤 엄마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자연호를 구하여 포화의 전장을 방황하여서 호를 발견해도 일본군에 의해 호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해 3개월 이상 전장 방황을 계속한 젊은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남편과 2명의 자녀(하나는 태어난 지 수개월

된 아기)를 잃었고, 그 외에도 양친을 포함하여 9명이 죽었습니다. 포격에 의한 즉사 혹은 부상의 약화나 기아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전후에는 '평화의 이야기꾼'으로서 전장체험의 전승, 전장지역 안내 등의 평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城重明이 쓴 『집단지결을 마음에 새기고— 오끼나와 기독교인의 절망으로부터의 정신사』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철저한 국가주의 교육, 황민화 교육을 받았던 당시 16세의 소년의 전장체험입니다.

소년은 미군이 최초로 상륙한 오끼나와섬 근해의 작은 섬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미군 상륙이라고 하는 긴급사태시 쓰라고 섬주민에게 수류탄을 2개씩 배급했다고 합니다. 미군과 마주치면 1개는 적에게 던지고, 나머지 1개로는 '옥쇄' 즉 자살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당시를 회상하여 "오끼나와전투의 비극적인 극한상황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편이 처를,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들에게도 항복을 허락하지 않고 죽음을 의무화하였던 일본군에 의한 전장체제 하에서는 수류탄의 불발로 죽지 못한 사람은 갈, 끈, 곤봉 등을 사용하여서라도 가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소년 자신도 '어머니에게 손을 빌려준 때 나는 비통의 울음을 울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후 기독교 목사가 되었고, 모 단기 대학의 학장을 거쳐 현재는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이에나가(家永) 교과서 검정소송의 법정에서 원고 이에나가측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전쟁체험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끼나와전 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앞에서 소개한 야에야마(八重山) 하테루마 섬 소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별이 된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고 극을 만들어 이것을 공연하였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은 66명의 비극을 전교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극화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과 교사, 부모와 지역이 공동으로 배워, 이시가키(石垣), 오끼나와, 전국에서도 부르는 평화 인권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끼나와전투의 진실을 명확하게 하고, '성전(聖戰)을 기치로 전시동원을 강제한 권력의 데마고기(선동)을 타격하는 학교와 지역의 학습 연구활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중의 체험, 의식, 이해를 기초로 하여 착실히 형성 축적되어온 것은 오십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체험한, 그래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오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사실 때문이겠죠.

소개한 하테루마섬 주민 모두의 활동, 당시 여학생, 어머니, 소년이었던 사람들의 인권 평화 활동과 같이 많은 오끼나와 현민은 각각의 오끼나와전쟁 체험을 전후 미군지배 하에서의 압정에 대결하여가는 데 원(原)체험으로 하면서 평화의 준수를 다음 세대에 향해 말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가해온 것입니다.

나. 학살기술 삭제의 교과서검정과 현민운동

1982. 6. 26.자 마이니찌 신문은 일본군에 의한 오끼나와 주민 학살사건의 기술이 일본 교육부(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에 의하여 어떤 일본사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음날 같은 신문은 사설 교과서 검정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이 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교과서 집필

자의 한 사람 아이찌대학의 에구찌 교수는 전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약 800명의 오끼나와 주민이 일본군의 손에 살해되었다고 썼습니다. 그 사실에 전쟁의 비극, 비참, 공포, 모순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 있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관련된 교육을 하라는데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군에 의하여 주민이 살해된 사실은 연구상의 상식이고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쓰여 있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은 학살사건에 대하여 쓰지 못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300여 일의 현민운동

이 삭제문제가 보도되자 현민은 바로 교과서 검정에 항의했습니다. 신문은 매일 이 현민의 항의를 보도했습니다. 교육단체, 시민단체, 조합, 정당뿐 아니라 현의회, 시, 정, 촌 의회가 삭제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중 당파가 일치하여 채택한 북 중성촌의회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의견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사상, 언론을 통제한 전쟁전의 군국주의 교육에 의하여 어리석게 침략전쟁의 길로 나아가고 곧 망한 것이 우리일본의 37년 전의 역사가 아니었던가. 우리 일본은 300여만 명의 귀중한 인명이 죽음을 당했고, 특히 오끼나와에서는 본토방위의 버림돌이 되어 19만 명의 군인, 민간인이 이미 항복하였어야 함에도 개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검정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두 선전에 나선 단체도 나타나고, 항의문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하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심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교육부장관도 국회에서 다음 교과서 개정 때는 충분히 배려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과서 검정에 의한 삭제문제가 발생하고 300여 일의 현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주민피해와 지방자치단체사, 자료관

오끼나와 전투에서 주민피해의 실태를 현의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자료관 또는 자치단체의 중요부분으로 기록, 전시, 발간하여왔습니다. 작년 오끼나와전투 격전지, 이또만시는 이또만시사 전시자료 하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주민의 전쟁피해 상황을 부락·집·가족별로 기록하고, 부락 지도에도 묘사하였습니다. 격전지였기 때문에 가족 전멸이 대부분이고, 그 때문에 촌도 이루어지지 않고, 3개의 촌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한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끼나와 전후 50여 년을 거처 드디어 공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3. 오끼나와의 미군기지

가. 무력에 의한 기지 점거

배포자료 중 하나인 오끼나와 미군기지도를 보십시오. 이는 오끼나와현 당국이 만든 지도를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오끼나와 본섬은 오끼나와현의 중심섬입니다. 남북 약 100킬로의 작은 섬에 제일 미군 전용기지 총면적의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끼나와 본토 북부에 북부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훈련장만으로 오끼나와현 이외의 제일미군전용기지 총면적과 비슷합니다.

또 미군은 섬 주위에 오끼나와 섬 면적의 수십 배나 되는 미군 훈련장 수역 및 공역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얼마나 큰가는 카데나쵸를 예로 들면 문제의 심각함이 한층 명백할 것입니다. 쵸의 면적의 82.8%가 미군기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입니다. 지도에는 미군해병대의 후텐마 기지도 보입니다. 이 비행장이 있는 기노완시의 인구는 1997. 3. 현재 83,229명이고, 비행장 주변에는 7개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5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민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도 어제 보신 대로입니다. 부모, 어린이,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50년간 계속해서 그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넓은 지역을 미군은 어떻게 점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오끼나와전투중에 점령하여, 전쟁이 끝난 후도 군사적으로 계속 점거하고, 1972년 행정권 반환 후에도 계속 점용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 동 조약 3조에 의해 행정권을 장악한 미국이 그 권력에 의해 새롭게 토지를 강제 점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미군에 의한 기지 강탈의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54. 8. 30. 당시 류큐 주민의 대표기관인 류큐입법원의 결의인 토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청원 결의가 그 강탈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의에 의하면 미군은 1시, 4촌에 걸친 경지 약 40,000평, 가옥 택지 70호분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작물심기 금지, 토지 건물의 명도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결의에서는 이 명령이 실행되면 관계주민은 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그 고통을 농민을 대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 토지의 점수방법은 총칼로 무장한 미군의 호위를 받은 불도저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옥을 무너뜨리고, 경지를 뒤집어버린다고 동 결의는 비난하였습니다.

나. 일본복귀운동

류큐 주민은 미군의 군사적 식민지 지배에 항하여 일본 본토와의 왕래의 자유, 의료, 교육, 산업, 수입, 복지 등 생활의 모두를 일본 본토수준으로 높이는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동시에 오끼나와의 행정권을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반환시키고 일본국 헌법의 적용을 바라 조국복귀운동을 계속 전개하였습니다. 류큐정부 입법원이 만들어진 1952년에 일본복귀요청을 결의하

고, 58년 이후는 거의 매년 행정권분리를 확정지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일에, 즉 4월 28일 굴욕일에 복귀 결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음에 소개하는 1962. 2. 1.의 결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결의는 오끼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미국이 지배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정신에 어긋나고, 일본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제연합헌장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오끼나와 통치의 실태도 국제연합헌장의 통치에 관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식민지주를 빨리,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종결시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오끼나와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빨리, 완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국제연합과 그 모든 가맹국에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즉 피해 당사자인 류큐 주민이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여 온 가해당사국인 미국정부와 이를 허가해준 일본정부의 행위를 식민지 지배라고 규탄하고, 국제연합 가맹국에 직접,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선언에 근거하여 류큐를 식민지상태로부터 구제하도록 일미 양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택한 날짜를 따 2.1 결의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호소를 거쳐 1963. 제3회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연대대회는 제1회 이래의 오끼나와 결의를 발전시켜 처음으로 오끼나와에 관한 결의라는 주제로 독립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17년간이나 계속된 미국 지배의 실체, 즉 아시아에 대한 침략 거점화, 미국 최대의 군사기지화, 오끼나와 주민의 식민지 억압의 계속을 지적하고, 일본인민의 싸움을 완전 지지한다. 즉 오끼나와 점령반대, 즉각적인 일본복귀, 기지 철거를 선언하고, 국제적 공동행동일 오끼나와 데이를 정하고, 그 실행방법을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호소하였습니다.

또 류큐입법원은 1967. 11. 사토오 총리대신 방미에 맞춰 오끼나와 시정권 반환을 요구하는